교 육 자 료
2020-06-001

2020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부과고지 사업장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업무 흐름도

보험관계성립신고

-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12p 참조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신고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신고

- ○ 입·퇴사시 : (산재)근로자고용신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20p 참조
- ○ 전근·휴직, 정보 변경 시
  : (산재)근로자 전근신고, 휴직 등 신고, 근로자정보변경신고
  (고용)피보험자 전근신고, 휴직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33p 참조
- ○ 일용근로자 : (산재,고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 31p 참조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 ○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 ○ 납 부 : 다음달 10일까지 ☞ 50p 참조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퇴직정산

- ○ 근로자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 ○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 57p 참조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까지
- ○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 59p 참조

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

- ○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 25p 참조

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

- ○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근로자 직권조사부과 : 유관기관(건강보험, 국세청 등)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정산, 정산 결과는 10월 보험료에 반영
- ○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 72p 참조

* 신고서식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및 다른 공단 EDI에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징수 및 정산 업무 흐름도

보험관계 성립신고

- ㅇ 건설업 본사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ㅇ 건설업 일괄적용 : 일괄적용 성립신고 – 건설업 등 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초 원도급 공사기간 중 건설업 등 면허를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
- ㅇ 개별공사 및 벌목업: 건설 및 벌목업 성립 신고 – 성립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12p 참조

개산보험료 신고

- ㅇ 산정기간 : 당해 연도(1.1. ~ 12.31.)
- ㅇ 신고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연도 중 성립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 ㅇ 보험료 : 추정보수총액×보험료율
- ㅇ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2~4회)
- ㅇ 유의사항 :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30% 이내인 경우 확정보수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

☞ 76p 참조

사업개시(종료)신고

- ㅇ 사업개시(종료) 신고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13p 참조

확정보험료 신고

- ㅇ 산정기간 : 전년도(1.1. ~ 12.31.)
- ㅇ 신고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연도 중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ㅇ 보험료 : 확정보수총액×보험료율
- ㅇ 납부방법 : 일시납

☞ 77p 참조

건설업 확정정산

- ㅇ 선정기준 : 국세청 결산자료 및 가성실적 자료를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과 대조하는 등 "확정정산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정산대상 선정
- ㅇ 실시기관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소속 「확정정산부(팀)」에서 정산
- ㅇ 정산원칙 :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하되, 정산 결과 추가 징수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점까지 정산

☞ 84p 참조

* 신고서식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및 다른 공단 EDI에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0년 가입 및 부과 업무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가 시행(시행일: '20.1.16.) 됩니다.



퇴직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정산 대상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 고 방 법

4대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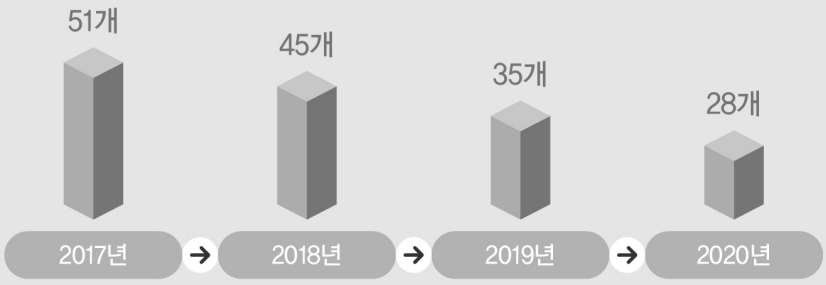
유 의 사 항

- 퇴직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귀속) 보수총액에 한해서는 보수총액신고서(신고기한: '20.3.16.까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개편 및 보험료율 인하

유사업종 통폐합으로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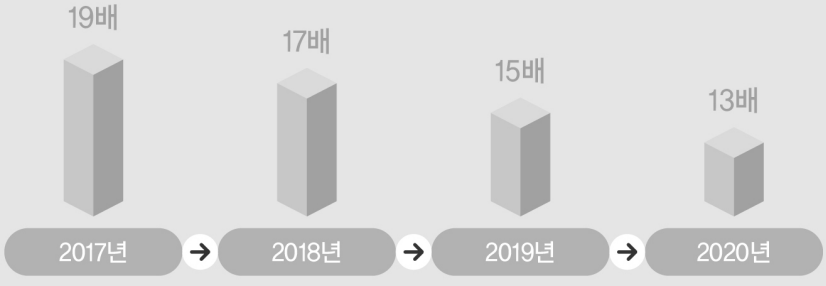
연도별 사업종류 현황



전체 사업 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단순화하여
특정 업종과 평균 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15배에서 13배로 낮추었습니다.



보험료율 격차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0.07%p
(2019년 1.5% → 2020년 1.43%p) 인하, 출퇴근 재해 요율 또한
전년 대비 0.02%p(2019년 0.15% → 2020년 0.13%p) 인하하였습니다.



- 2020년도 일반 요율(평균): 1.43%(전년 1.5% 대비 0.07%p ↓)
- 2020년도 출퇴근재해 요율(평균): 0.13%(전년 0.15% 대비 0.02%p ↓)

2020년도 적용 및 부과업무 관련 고시

구분		2019년		2020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35개		28개	
산재 보험료율	평균요율	15.0/1,000		14.3/1,000	
	- 최고	225/1,000(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1,000(석탄광업 및 채석업)	
	- 최저	6/1,000(금융및보험업 등 5개)		6/1,000(금융 및 보험업 등 3개)	
일반건설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0%		하도급공사금액의 30%	
벌목업 노무비율		1㎥당 10,830원		1㎥당 10,718원	
중소기업 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	1등급	2,004,000원	66,800원	2,061,600원	68,720원
	2등급	2,406,540원	80,218원	2,480,301원	82,677원
	3등급	2,809,080원	93,636원	2,899,002원	96,633원
	4등급	3,211,620원	107,054원	3,317,703원	110,590원
	5등급	3,614,160원	120,472원	3,736,404원	124,547원
	6등급	4,016,700원	133,890원	4,155,105원	138,504원
	7등급	4,419,240원	147,308원	4,573,806원	152,460원
	8등급	4,821,780원	160,726원	4,992,507원	166,417원
	9등급	5,224,320원	174,144원	5,411,208원	180,374원
	10등급	5,626,860원	187,562원	5,829,909원	194,330원
	11등급	6,029,400원	200,980원	6,248,610원	208,287원
	12등급	6,432,060원	214,402원	6,667,320원	222,244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	1,820,000원		1,820,000원	
	2등급	2,080,000원		2,080,000원	
	3등급	2,340,000원		2,340,000원	
	4등급	2,600,000원		2,600,000원	
	5등급	2,860,000원		2,860,000원	
	6등급	3,120,000원		3,120,000원	
	7등급	3,380,000원		3,380,000원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3,906,885원		4,226,652원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3/1,000	실업급여	16/1,000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150인미만	2.5/1,000	150인미만	2.5/1,000
		150인이상 (우선)	4.5/1,000	150인이상 (우선)	4.5/1,000
		150인이상	6.5/1,000	150인이상	6.5/1,000
		1천인이상	8.5/1,000	1천인이상	8.5/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5/1,000		1.3/1,00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6/1,000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1,000		0.03/1,000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보험료율	사 업 종 류	보험료율
0. 금융 및 보험업		5. 운수·창고·통신업	
000 금융 및 보험업	6	500 철도·항공· 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8
1. 광업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10 통신업	9
103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6. 임업	
2. 제조업		600 임업	58
200 식료품제조업	16	7. 어업	
202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	11	700 어업	28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8. 농업	
206 출판·인쇄·제본업	10	800 농업	20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210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21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905 기타의 각종사업	9
219 금속제련업	10	907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910 도소매·음식·숙박업	8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3
30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14
4. 건설업		·주한미군	7
400 건설업	36	·임금채권부담금	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

2020년도 기준보수 고시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
서울	2,276,881	2,219,174	2,334,312	1,847,569	1,944,848	2,375,336	2,144,239	1,952,918	1,987,342	1,870,762	2,187,734
부산	2,402,769	2,029,484	2,394,059	1,843,779	1,891,818	2,293,511	1,871,282	1,948,794	1,866,140	1,919,540	1,999,299
대구	2,197,120	1,988,366	1,847,275	1,833,512	1,975,280	2,018,222	1,844,949	1,802,422	1,882,948	1,835,691	1,862,044
인천	2,432,073	2,004,004	2,219,309	1,843,657	2,059,556	2,397,119	1,962,222	1,855,759	1,893,221	2,304,069	1,886,072
광주	2,468,603	2,047,870	2,383,387	1,836,099	1,899,145	2,016,887	2,457,713	1,869,868	1,901,259	1,814,248	2,034,756
대전	2,379,144	1,981,442	2,033,212	1,821,347	1,802,877	2,156,804	1,979,721	1,836,882	1,986,899	1,859,516	2,145,079
울산	2,646,736	2,102,626	2,324,504	1,853,019	2,346,089	2,371,053	1,955,346	1,823,569	1,853,937	1,799,417	1,931,435
경기	2,526,250	2,124,030	2,022,424	1,846,367	2,055,772	2,347,519	2,003,097	1,873,959	1,857,874	2,082,984	2,091,724
강원	2,323,452	1,847,819	1,962,121	1,839,268	1,922,111	2,148,618	2,144,330	1,795,310	1,897,784	2,023,318	1,971,735
충북	2,867,974	1,929,322	1,989,470	1,835,015	2,013,840	2,169,942	1,971,179	1,913,611	1,897,444	1,907,111	1,878,690
충남	2,751,124	1,994,618	2,204,735	1,845,915	2,088,185	2,458,639	1,988,880	1,808,188	1,882,084	1,804,983	1,885,502
전북	2,474,615	1,862,154	2,160,638	1,848,673	1,843,038	1,972,517	1,909,800	1,818,324	1,966,465	1,864,240	1,975,240
전남	2,473,447	1,864,746	1,981,653	1,842,041	2,198,537	2,150,149	1,803,891	2,010,274	1,933,254	1,892,775	1,979,664
경북	2,525,708	1,935,566	1,869,823	1,843,293	1,894,058	2,173,570	1,916,729	1,795,310	1,869,601	2,042,550	1,913,573
경남	2,647,576	2,024,446	2,082,196	1,819,563	1,869,501	2,314,059	2,318,448	1,795,310	1,871,081	1,852,613	2,088,803
제주	2,301,683	1,848,747	2,427,327	1,905,954	1,795,310	2,381,314	1,803,067	1,857,495	1,934,233	1,826,971	1,960,923
세종	2,110,780	1,849,572	2,008,371	1,795,310	1,795,310	1,802,279	1,973,015	1,988,110	1,853,116	1,833,793	1,870,595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산 업 분 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249,737
B. 광업	2,623,81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389,036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352,510
F. 건설업	4,226,652
J. 정보통신업	2,528,876
K. 금융 및 보험업	2,331,97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291,602
U. 국제 및 외국기관	3,449,658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서 주44시간제 사업의 경우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

: 목차 | CONTENTS |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 1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 2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 3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 5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 6
제2장 보험 가입자 ····· 9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 12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 17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 18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20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 33

제4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 39

제1장 보험료 산정 ····· 40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 50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 76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87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 88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 97

제6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 99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100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103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104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115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 119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122

제7편 벌칙 등 / 127

1. 과태료 ····· 128
2. 가산금 ····· 129
3. 연체금 ····· 129
4. 보험급여액의 징수 ····· 130

제8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133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원칙 ····· 134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 135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145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 149
제5장 이의신청 ····· 153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 154
제7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 156
제8장 신청서 접수 ····· 159
제9장 참고사항 ····· 168

제9편 보험사무대행기관 / 171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 172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174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 180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 181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184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187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 193

제10편 참고 사항 / 205

〈참고1〉 서식자료 ····· 206
〈참고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 207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209
〈참고4〉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 212
〈참고5〉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216

제1편

산재 · 고용보험
개요

-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1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임
-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함

산재보험 급여 종류

① 요양급여(치료비)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유족급여 ⑤ 상병보상연금 ⑥ 장의비
⑦ 간병급여 ⑧ 직업재활급여 등

2 고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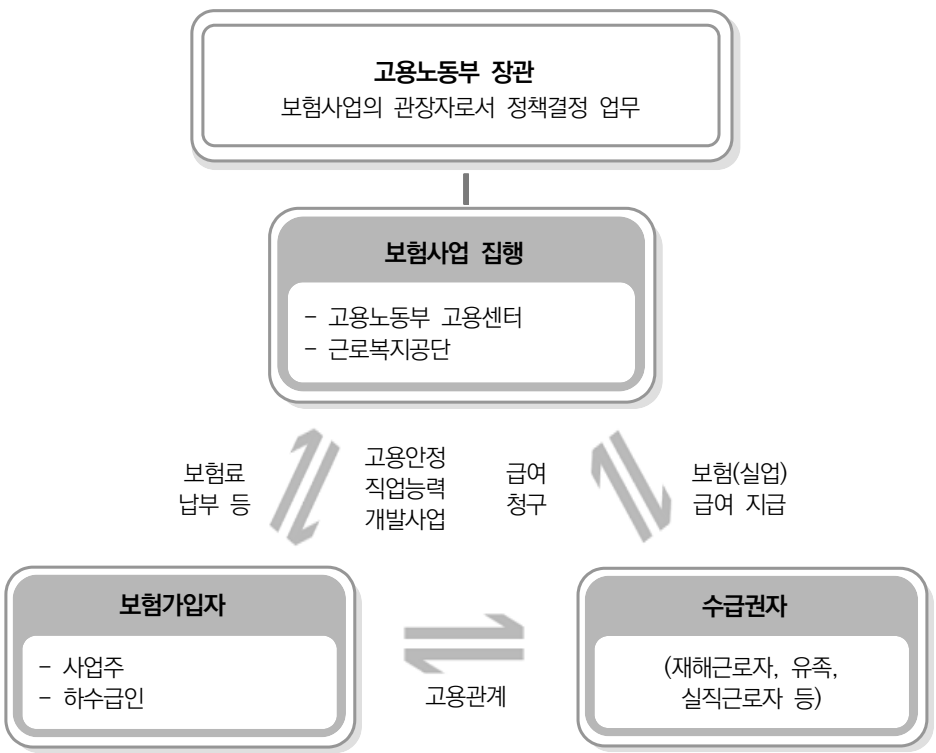
-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임
- 근로자(보수의 0.8%)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주요 사업

①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②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산재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및 요양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 고용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17.1.1.부터 수행), 고용보험 적용·징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산재·고용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제2편

산재 · 고용보험
가입

-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 제2장 보험 가입자
-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제1장 보험가입 대상

1 가입범위 및 의무가입 대상

가. 가입범위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나. 의무가입 대상

구분		2018.7.1.부터
산재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고용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사례 **커피숍 운영 중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당연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례 **개인이 건축공사(인테리어 등)을 직영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인테리어 등)을 직영하는 경우라도 연면적 및 총공사금액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2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

가. 일반사업

-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사업장" 단위)함을 원칙으로 하며,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 단위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 가능

나. 건설업

- 건설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 건설사업자란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는 공사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하여야 함.
-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사업장)별 가입

다. 벌목업 등 사업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

- 허가 단위별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

고용·산재보험의 건설업 적용 대상

❍ 고용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대통령령(고용 · 산재법 시행령)으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제외

❍ **건설업과 관련하여 고용 · 산재법 시행령**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 ·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 **'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던 **산재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그 적용대상이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됨**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은 변함없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18. 7. 1. 기준으로 변경됨
- 산재보험은 **'18. 7. 1.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대상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

❶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http://total.kcomwel.or.kr)
→ 사업장 → 증명원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❷ 콜센터 ☎ 1588-0075 통화
→ 단축번호 217(제증명발급 신청), 사업주 또는 대리인만 가능

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팩스 송부 또는 방문

❹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제2장 보험가입자

1 보험가입자

가. 보험가입자의 범위

-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됨

※ 보험가입자는 사업 영위 활동으로 각종 보험행정 신고 업무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 단위별로 1명 이상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사무를 대리할 수 있음
- 법인인 경우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 개인인 경우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나.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임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 요건 및 절차

(1) 승인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건설업에 한함
- 하수급인 사업주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종목별 면허 보유 필수임)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

※ 다만, 다음의 ①, ② 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신청은 승인 불가임

①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주의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명세서" 신청을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로 잘못 알고 착오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비교 〉

구분	보험	용도	구비서류	제출기한
하수급인명세서	고용	피보험자신고용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14일 이내 (원수급인 제출)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승인신청서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 변경	·하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하도급 착공후 30일이내 (원수급인 신청)

사례 개인 건축공사를 도급 준 경우 보험가입자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 A가 2억5천만원에 건설사업자인 B에게 전부 도급을 준 경우 보험가입자는 건설사업자인 B가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판단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일반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판단

❖ 산재보험(판단기준 변경)

보험가입자 판단	기존	변경	시행일
건설현장 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파견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2018.1.1.

※ '임대, 도급' 등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함

❖ 고용보험(기존과 동일)

■ 건설용의 기계 ·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 · 장비 조작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건설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임대사업 소속의 근로자로 하여 적용

- 다만, 건축·토목공사 등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
- 건설면허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사실상의 건설도급계약에 의해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함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1 보험 성립신고

가. 보험관계의 성립일과 제출서류

	의무가입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성립일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제출서류*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벌목업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가입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기한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근로자 고용신고서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보험성립일 판단 기준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유형(일용, 상용, 시간제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 일부터 적용

다.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당연 일괄적용의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일 것*

※ 건설업 당연일괄 적용대상은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의 경우 공사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3) 임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산재보험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함

③ 건설업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당연 일괄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4) 보험관계의 유지

-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 연도 이후의 보험 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됨

(5) 일괄적용의 해지

-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사업개시신고

-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2 보험관계의 변경

가. 보험관계의 변경

-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나. 변경내용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다만, 우선지원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변경은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보험관계의 소멸

가.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해당 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 일괄적용의 해지 :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보험관계의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 멸 일 :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1부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해지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3개월 경과 시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		
13. 일반연수(D-4)	×	28. 동 반(F-3)	×
14. 취 재(D-5)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15. 종 교(D-6)	×	28의3. 영 주(F-5)	○(강제)
		28의4. 결혼이민(F-6)	○(강제)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18-2. 구직(D-10)	×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② × : 적용제외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1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고용)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사 유	취득(고용)일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되는 경우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한 날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나머지 사업장에서 취득)
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에서 부과고지 사업으로 사업종류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해외파견 사업에서 국내 부과고지 사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특수형태근로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근로자 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3)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신고

- 취득일 :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 계산(고용보험법 제50조 제⑤항, '15.1.20. 시행)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이고,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부과 가능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3) 재외국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한 취득신고서에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국내거소신고 처리

(4)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 개별사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신고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은 신고 불필요)

(5) 자활근로자란 지역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취득신고 시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 란에 보장자격을 구분하여 신고

※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생계급여수급자라하여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란에 자활근로자로 체크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부과고지 및 자진신고 신고 사례

사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 사업장에 고용신고 (고용보험이 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A (제조업 : 부과고지)	
2	을		
3	병		
4	정		관리번호 : B (제조업 : 부과고지)
5	무		
6	기		
7	경		관리번호 : C (건설업 : 자진신고)
8	신		

☞ 관리번호 A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갑, 을, 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B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C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해당 없음(자진신고)

사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 사업장에 고용신고(고용보험이 자진신고 대상인 경우)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A (건설업 : 자진신고)	
2	을		
3	병		
4	정		관리번호 : B (제조업 : 부과고지)
5	무		
6	기		
7	경		관리번호 : C (제조업 : 부과고지)
8	신		

☞ 관리번호 A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 : 해당 없음(자진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B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C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신고 대상 : 경, 신

다. 신고내용 및 신고서 작성 방법

(1) 근로자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구분

- 고용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 체크
  ※ 예 :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 적용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 체크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 시 1년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 고용·산재보험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 체크

(2)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3) 월 평균보수

- 취득(고용)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4)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일

-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일을 기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과 산재보험 고용일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기재

(5) 직종부호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136개) 직종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하되, 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재

(6)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한 값을 기재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월소정근로시간 × 12) / 365 × 7

(7)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계약직 근로자여부에 대해 ☑ 표시를 하고, 계약 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기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 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기재

(8)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해당자만 기재)

- 고용·산재보험료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보험료만 부과되는 근로자는 보험료부과구분 란에 해당하는 부호와 사유 코드를 각각 기재

부호	사유코드	사유(대상근로자)	부과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	○	x	x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03	현장실습생	○	x	x	x
	13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2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8.9.21.부터 산재보험 제외)	x	x	x	x
54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x	○	○
55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x	x	○	○
	06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01	별정직·임기제공무원	x	x	○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8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x	x	○

※ 해당보험에 취득(고용)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는 범위를 말함(O표시 되어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2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 유	자격상실(고용종료)일
공통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적용 제외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 근로관계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에 가입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이중고용으로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산재보험	해외파견 사업으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사업종류 변경으로 부과고지 사업에서 자진신고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를 함께 제출

(2) 상실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상실사유 분류 중 '자진퇴사에 의한 이직',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및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기타'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4)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와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함께 제출

사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2019.6.13.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 보험관계소멸일 : 2019.6.14.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기한 : 2019.6.27.
-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 제출기한 : 2019.7.15.
-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19.6.27. 이므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미 소멸한 사업장의 2019. 6월분 월별보험료가 일할계산 되지 않고 전액 부과된 후 2019. 7월분 보험료 산정시 재산정(감액)됨. 『보수총액신고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다시 보험료가 추가징수 또는 감액됨

다. 신고서 작성 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2) 전화번호(이동전화)

- 통지서 등을 알림톡으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이동전화번호 기재

(3) 상실연월일

- 자격상실(고용종료)일을 기재

(4)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재

※ 월별보험료는 자격상실(고용종료)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되며 자격상실(고용종료) 시 신고한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되나, 2019년(귀속)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

3 이직확인서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고용보험법」제2조)
* '20.08.28. 부터「고용보험법」제16조 삭제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2)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

나. 신고 내용

-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임금내역, 기준보수,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신고(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1)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 가능함

(2) 이직사유가 상실신고서상의 상실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완된 이직확인서 제출
- 당초 신고한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정정요청서(상실사유 확인가능자료 일체 포함)를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해 통보하고 사업주가 사후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라. 신고서 작성 방법

(1) 이직사유

-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상실(이직)사유 구분은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참고하여 상실(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

(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대상기간은 기준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이직일(상실일의 전날)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함
- 보수지급이 전혀 없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11. 9. 22.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는 급여특례 ·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 기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

※ (제도 개선) '16. 12. 27.이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급여특례·차상위계층 기타급여(주거·의료·교육) 수급자는 실업급여 해당, 생계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제외로 변경

(3) 보수지급 기초일수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

- 즉,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기간 등을 포함하지만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예)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 주40시간제라 하더라도 주6일 근무 등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토요일 포함

(4)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총합계를 기재하며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때는 180일로 기재함

(5) **기준기간 연장** :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고 필요 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6) 임금계산기간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3개월)을 사업장별 임금계산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이직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이 됨에 유의

(7) 총일수

- 임금계산기간의 총일수를 기재하되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일수는 공제

(8) 임금내역

-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기재하고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 그 외의 임금액은 기타 란에 기재

(9)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 반드시 기재

(10) 기준임금(기준보수)

-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 기재

(11)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체크

(12) 초단시간 근로일수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일수를 기재 (해당자만 기재)

사례 **임금계산 마감일이 매월 말일인 사업장에서 '19. 11. 16. 이직한 자**

평균임금 산정 내역				
⑰임금계산 기간	8. 17.부터 (11.16. 이직일로부터 역월로 3개월 이전일) 8. 31.까지	9. 1.부터 9. 30.까지	10. 1.부터 10. 31.까지	'19. 11. 1.부터 (임금계산마감일의 다음날) 11. 16.까지 (이직일)

사례 **임금계산 마감일이 매월 25일인 사업장에서 '19. 10. 31. 이직한 자**

평균임금 산정 내역				
⑰임금계산 기간	8. 1.부터 8. 25.까지	8. 26.부터 9. 25.까지	9. 26.부터 10. 25.까지	'19. 10. 26.부터 10. 31.까지

※ 원칙적으로 이직일 포함. 다만, 이직한 날에 만근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직일을 포함하지 않고 역일 계산
※ 알기 쉬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동영상 활용

싸이트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동영상 조회 방법
YouTube	· 전체 동영상(9분14초), 1편~ 4편 동영상(각 3분 내외)
공단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작성방법」전체 및 1편~4편 동영상 · **동 영 상**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작성방법」전체 동영상 · **서식자료**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전체 및 1편~4편 동영상 · **가입납부서비스** →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자 자격관리 → 이직확인서 → 전체 및 1편~4편 동영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고용관리→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전체 및 1편~4편 동영상
고용보험EDI 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4대사회보험 한국세무사회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건강보험EDI(www.edi.nhis.or.kr) · 국민연금EDI(www.edi.nps.or.kr) · 4대사회보험(www.4insure.or.kr) · 한국세무사회(www.kacpta.or.kr) → 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 → 전체 및 1편~4편 동영상

4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예) 2019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5월, 6월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파일작성 시에도 동일, 해당 월이 다를 경우 다른 파일로 작성)

(2)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3) 외국인 일용근로자

① 당연적용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4)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하여야 함

(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일용근로자란?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임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란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며, 국세청신고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필수 기재
따라서 국세청 통보를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됨

일당 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자 동거친족 등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대상이 아닌 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청 전송 대상은 고용·산재보험 신고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전송되므로 고용·산재보험 신고 대상자와 적용제외자를 함께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별도 신고해야 함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1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용어정리) 산재보험에서는 "전보"로,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전보)일, 전근(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 전근(전보)신고서 상의 전근(전보)일은 발령일로 기재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전근(전보)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함
  - 일괄적용사업장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
    ※ (주의)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 아님

(2)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음

(3) 전근(전보) 전 사업장과 전근(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근(전보) 신고를 해야 함

(4)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전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함

[사업장의 흡수·합병 및 분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처리]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

2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나. 신고 내용 및 사유

(1)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휴직사유 등

(2) 휴직 등의 신고 사유

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②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③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④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⑤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산재보험만 해당)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 신고대상이 아님

※ (주의)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일반근로자↔노조전임자)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휴업·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노조전임자 제외)

구분	월별보험료 부과	정산보험료 부과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	○	○
산재보험	×	×	×

3 근로자 내역(정보) 변경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나. 신고 내용

(1)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정보 변경 내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 (고용보험만 해당)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1)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전보신고서」,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

(2)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3) 자활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 중 취득신고 후 보장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	보험료 부과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O	x	O	O
생계급여 수급자	O	x	x	O

4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가.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항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고용일), 상실일(고용종료일), 전근(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구분
- (고용보험만 해당)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이직사유(이직확인서), 평균임금 등 기타 이직 확인 내용

※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은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로 신고)

※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 사회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내역 정정은 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방법

(1) 서면신고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2)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산재보험만 해당) 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구분
  - (고용보험만 해당)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구분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고용보험만 해당) 취득일, 상실일, 전근일,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이직사유(이직확인서) 등 기타 이직 확인 내용

※ 근로자가입정보 정정 업무는 공단의 고유 업무이므로 타기관 EDI를 사용할 수 없음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1)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이직사유(이직확인서), 평균임금 등 기타 이직 확인 내용 정정은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2)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일반근로자↔노조전임자)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는 보험료부과구분 정정신청 해당 없음(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모두 부과됨)

- 변경일에는 일반근로자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신분변동일 기재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 시에만 변경일을 기재. 그 외 정보(내역) 정정신청은 고용일부터 정정처리 되므로 별도로 변경일을 기재하지 않음

노조전임자 구분	보험료 부과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x	x	O	x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O	O	O	O

5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가.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항목

(1) 근로자 취득(고용), 상실(고용종료), 전근(전보), 휴직 등 신고, 이직확인

※ 근로자 가입정보의 취소는 4대 사회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내역의 취소는 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서」서식에 취소하여야 하는 항목 체크

(2) 취소신청 시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 내역,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제4편

산재 · 고용보험

보험료

- 제1장 보험료 산정
-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1장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기준

가. 보험료 산정 및 부담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 산재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실업급여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전년도 확정보험료(=확정보수총액×보험료율)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함께 자진 신고·납부(또는 충당·반환)

● 보험료의 부담 원칙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나.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1]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2]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1)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가.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미포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20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3/1,000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검색창(예: '20년도 산재보험료율)에 게재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상 용어가 아닌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를 인용)

● 보험료율 적용방법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나.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함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 분		'99. 1. 1.이후		'03. 1. 1.이후		'06. 1. 1.이후		'11. 4. 1.이후		'13. 7. 1.이후		'19.10.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5%	0.5%	0.45%	0.45%	0.45%	0.45%	0.55%	0.55%	0.65%	0.65%	0.8%	0.8%
고 용 안 정			0.3%		0.15%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명 미만 기업		0.1%		0.1%		0.25%		0.25%		0.25%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45%		0.45%		0.45%		0.45%
	150명 이상~ 1000미만 기업		0.5%		0.5%		0.65%		0.65%		0.65%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7%		0.7%		0.85%		0.85%		0.85%		0.85%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 업 분 류*	분류기호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A),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 부동산업(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산업분류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N76(부동산 이외 임대업)는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위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개정 2013.1.25.)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1) 의의

-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2) 적용요건·대상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 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총공사금액 = [2년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②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사업주가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가입정보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기준으로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100억원 이상 ('95년)	60억원 이상 ('08년)	40억원 이상 ('11년)	20억원 이상 ('16년~)	60억원 이상 ('19년~)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사업	500명 이상 ('64년)	200명 이상 ('67년)	100명 이상 ('76년)	50명 이상 ('87년)	30명 이상 ('96년)	20명 이상 ('11년)	10명 이상 ('16년~)	30명 이상 ('19년~)

(3)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①보험수지율에 의한 ②증감비율)**

① 보험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 기준보험연도 3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년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천재지변·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외.(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합산)

- **3년간의 보험료총액: 기준 보험 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 보험 연도 개산보험료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보험료액)
  - 기준 보험 연도 직전 2개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액(정산보험료액)의 합계액
  - 기준 보험 연도 3년 전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액 또는 정산보험료액 × 6 ÷ (기준 보험 연도의 3년 전 보험 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 증감비율

【보험 수지율 대비 증감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 백분율(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한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 인하한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한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한다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 인하한다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 인상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한다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한다

라. 산재예방요율('15년 보험료율부터 적용)

(1) 목적

- 개별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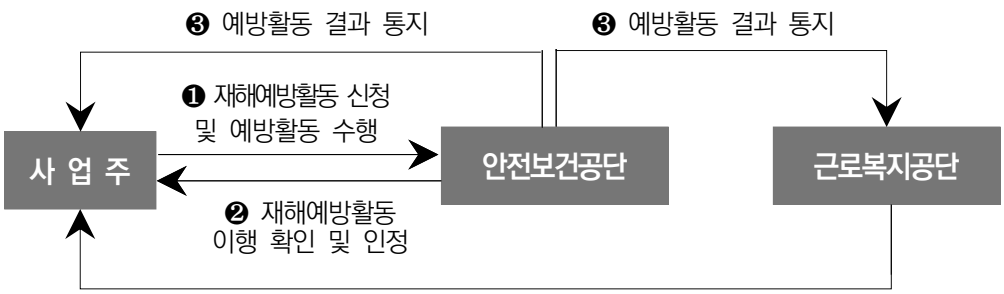
※ '14. 1. 1. 이후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신청 및 수행, 수행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2)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인 사업

※ 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3)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 ►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❶) : 사업주
- ►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결과통지(❷,❸) : 안전보건공단
- ► 예방요율 반영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통지(❹) : 근로복지공단

(4) 재해예방활동지표

구분	내 용	인정 유효기간	보험료율 인하율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인정일로 부터 3년	20%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인정일로 부터 1년	10%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	인정일로부터 2021.6.30까지	10%

※ 위험성평가와 사업주교육을 중복 실시한 경우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중복 실시한 경우 위험성평가 또는 사업주교육 인하율에 합산한다

(5)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재해예방활동 인정일부터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일 이후부터 취소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재해는 제외〉
  - 그 밖의 재해예방활동의 목적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일부터 취소대상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인 경우에는 사업종류변경적용일 이전까지 적용, 변경적용일 이후부터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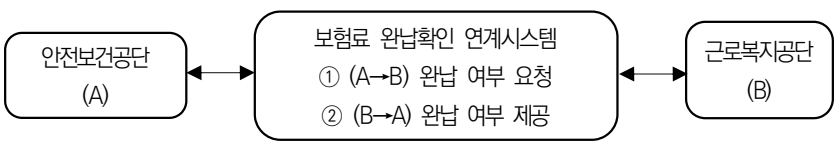
사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1. 2017. 4. 1.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은 경우 인하율= 10%①×[275일②/365일]=7.5%
   ① 예방활동지표(교육) 최대 인하율 ② 2016년 예방활동 인정기간(4.1.~12.31. 동안의 일수)
2. 2018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7.5%가 인하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7.75/1,000
3. 2018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라 7%가 인하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4.5%(예방요율 7.5%+개별요율 7%)가 인하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5.65/1,000

☞ 산재예방요율과 관련하여 재해예방활동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으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사업장의 클린사업 지원금 신청 시, 완납증명원 첨부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 안전보건공단과의 보험료 완납확인 연계시스템으로 첨부 서류 생략('18. 현재 시행 중)
- 클린사업 지원금 신청 시,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마.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징수방법 및 비율

(가) 부담금 징수방법

-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보수총액으로 함
- 부담금 부담(납부) 주체는 사업주이며 공단은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통합하여 징수

(나) 부담금 비율

- 부담금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05년 ~ '09년	'10. 1. 1부터	'16. 1. 1부터
0.4 / 1,000	0.8 / 1,000	0.6 / 1,000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가) 경감대상

-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경감

(나) 경감비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25%(0.2/1,000)
  ('10.12.1.부터 '12.12.31.까지)
-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5) 임금채권 보장범위 및 신청방법

- 체당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 수당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당금경감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부담금경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알림마당 〉 자료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신청가능(첨부서류로는 퇴직보험 등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 현황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바.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목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석면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환경부)하였고, 이에 2011.1.1.부터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유기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부과대상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부과함
  1.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본사는 상시인원과 관계없이 부과)
  2. 건설업사업주(사업의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
- 위 각 호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2020년도 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상시근로자 산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함.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 또한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보아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1 월별보험료 부과

가. 개념

-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

>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의 합계

나. 업무 절차

수행주체	일정	처리업무
사업장	매월 15일까지	고용신고, 고용종료신고, 근로자정보변경, 월평균보수변경
⬇		
우리공단 지사	매월 15일까지	신고접수 마감 및 처리
⬇		
우리공단 본부	매월 15일 ~18일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자료 구축
⬇		
건강보험 공단	매월 22일	고지서 출력 및 발송
⬇		
사업장	매 익월 10일	보험료 납부

다. 근로자 유형별 보험료 부과 방식

(1) 일반(상용) 근로자

- 월별보험료는 고용일(자격취득일)부터 고용종료일(자격상실일) 전일까지 부과하며,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더하여 사업장 단위로 부과

-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전보 이후 사업장을 나누어 부과
- 노조전임자, 자활근로종사자 등 보험료의 일부만 부과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신고 시 또는 근로자정보변경을 통해 부과부호를 신고하고, 부과부호에 따라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 월평균보수 × (근무 일수/월의 총일수) × 보험료율

Q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시 근무 일수는 그달의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나요?

Answer 아닙니다. 사유발생일(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등)부터 그달의 말일 또는 그달의 초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월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 근무일(출근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일용 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1] × 보험료율

1)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총액

-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
- 공단은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보수로 그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가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단, 연도를 넘겨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신고서」 또는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함**

사례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일용근로자 김OO의 2019년 4월 일용근로자 근로자가입정보 내역(일당 100,0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1				1						1.5					1									

▶ 총 지급받은 보수총액: 650,000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일: 5월 14일
▶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20/1,000인 경우
2019. 4월 김OO의 월별보험료 650,000원 × 20/1,000 = 13,000원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5월 고지서에 김OO의 보험료 13,000원 포함, 6월 10일까지 납부

(3)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 신고의무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산재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근로자는 전년도에 지급한 해당 근로자들의 보수총액 합계를 전년도 사업장 보험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text{그 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 \frac{\text{전년도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합계}}{\text{사업장 보험가입월수}} \times \text{보험료율}$$

- 따라서 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 입사 연도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위 산식에 의해 월별보험료 부과

※ 그 밖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기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되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그밖의 근로자 채용 계획이 전혀 없어 월별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 다음달부터 그밖의 근로자 부과 조정 가능(그 밖의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999999-9999999로 입력)

Q **부과고지사업장 월별보험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Answer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입·퇴사, 전보, 휴직 등 근로자가입정보 또는 월평균보수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전월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가.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적용

【고용일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적용 및 신고방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전년도 9.30.이전	$\frac{\text{전년도 보수총액}}{\text{전년도 근무개월수}}$	2020년 4월 ~ 2021년 3월
전년도 1.1.~9.30.이고 고용월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	$\frac{\text{전년도 보수총액}}{\text{전년도 근무일수}} \times \frac{\text{전년도 근무일수} - \text{고용월 근무일수}}{\text{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전년도 10.1.이후	$\frac{\text{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text{개월}}$ 단,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 및 기간	고용일이 속한달 ~ 2021년 3월

사례 월평균보수의 산정

- 연간보수총액 10,000,000원, 전년도 근무개월수 12인 경우
  10,000,000 / 12 = 833,333.333 월평균보수는 833,333원(원 단위 미만 절사)

나. 월평균보수의 정정 또는 변경

(1) 월평균보수의 변경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공단에 제출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 적용되어 월별보험료 산정

※ 실제 변경된 달이 아닌 신고서 제출일 다음달 월별보험료부터 적용

(2) 월평균보수의 정정

-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변경사유를 착오정정으로 신고)

- 전년도 입사한 근로자의 고용신고 시 월평균보수가 잘못 신고(입력)된 경우: 1월 1일
- 보수총액의 착오신고로 월평균보수가 잘못 산정된 경우: 4월 1일
- 월평균보수변경신고 시 금액을 잘못 신고(입력)한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 적용일

Q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한다는데 맞나요?

Answer ◎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작성란에 체크**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외에도 체크리스트, 신청 세부내역, 임금대장 등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가. 개념

- 월별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별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
  - 월별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부과

  * 근로자에게 월별 실제 지급한 확정 보수총액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연도 중에는 실제 보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평균보수로 부과 후 실보수로 정산

-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 부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함

나. 정산방법

-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을 신고
- 퇴직정산 :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시 신고하여 정산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대상)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매년 7월과 9월에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 자진신고 사업장 :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

※ 소멸사업장 : 부과고지(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자진신고(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신고)

다. 정산시기

-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신고
- 퇴직정산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전전년도 수정·경정분) 8월 월별보험료에 반영
  (전년도 정기분) 10월 월별보험료에 반영

※ 소멸사업장 : (정산일)1~15일 : 정산을 실시한 달/(정산일)16~말일 : 정산한 달의 다음 달

라. 정산대상

- 전년도 또는 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개인별 정산) 근로자가입정보가 있는 상용근로자
  - (사업장 정산)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

※ 사업장 정산은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의 합산을 신고하고 보험료 부과·납부

마. 업무절차

보수총액신고

공단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안내 : 매년 2월
⇩	
사업장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매년 3월 15일까지**
⇩	
공단	정산보험료 산정(추가부과, 충당, 반환)
⇩	
건강보험공단	정산보험료 고지 : **4월분 고지서**
⇩	
사업장	보험료 납부 : 5월 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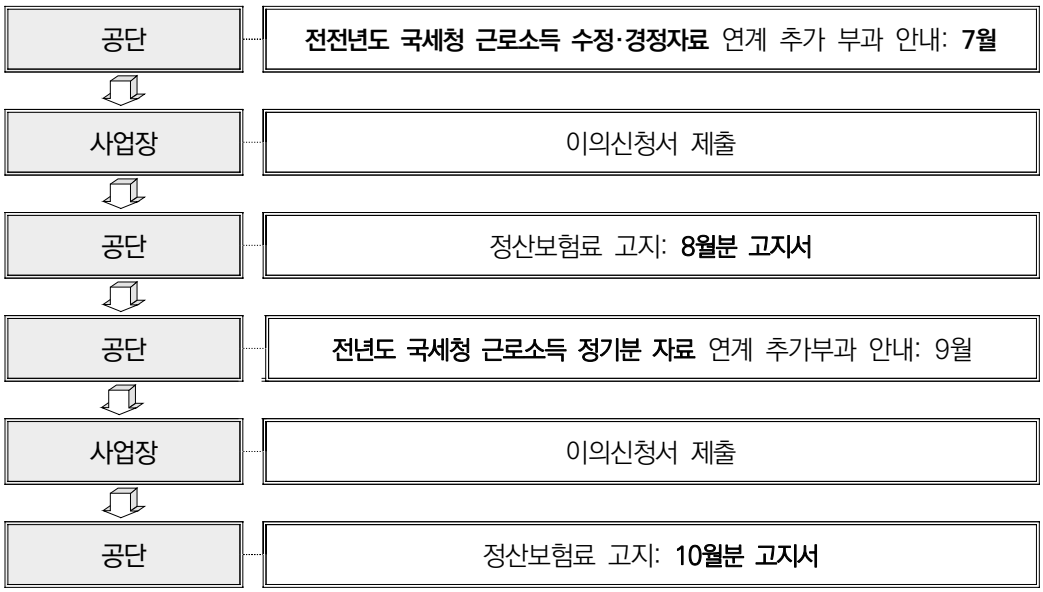
※ 소멸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정산

퇴직정산

사업장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제출 : 매월 15일까지
⇩	
공단	퇴직근로자 정산 보험료 산정 및 월별보험료 합산 부과
⇩	
건강보험공단	퇴직근로자 정산보험료 고지 : 매월 22일
⇩	
사업장	퇴직근로자 정산 보험료 납부 : 매 익월 10일까지

※ 월별보험료에 퇴직근로자 정산 보험료 합산 부과, 충당, 반환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은 근로소득자료와 연계하여 차액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

바. 퇴직정산

(1) 퇴직정산의 기능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 편의 제고 및 정산 보험료 일시납 부담 감소

※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9제1항개정('19.1.15.공포, '20.1.16.시행)으로 '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퇴직정산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신고 가능
  -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l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건강보험 EDI서비스

-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

(3)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 신고」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

(4) 보험료 퇴직정산 Q&A

Q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예.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의 산정기간이 다르거나 각각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Q 일용근로자는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Answer 아니요. 퇴직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부과고지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고용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상용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이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도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Answer 예.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임의가입 외국인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며,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사. 보수총액신고

(1) 보수총액신고의 기능

- 월별보험료의 정산
  - 월평균보수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를 확정된 보수로 보험료를 정산(추가부과, 충당, 반환)
- 월평균보수의 산정
  - 전년도 9.30. 이전에 고용(취득)된 근로자의 해당연도 월평균보수 산정

(2)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방법

-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만 가능
    - ·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 : 전산처리 테이프, 디스켓 또는 CD(Compact Disc)를 이용하여 신고(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규정된 포맷 사용)
-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1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
  - 보수총액신고서 서면신고 가능(방문, 팩스, 우편 등)

(3) 보수총액신고서의 수정 신고

- 신고사유
  -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하여야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공단이 사업주에게 조사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

(1) 보수총액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기한은 3.16(월)까지입니다.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팩스접수 : 0502-123-4567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	전화: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최종생산품(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①-1(산재)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취득일	산재보험 상실일	산재보험 ②연간보수총액(원)	③-1 근무지코드	고용보험 취득일	고용보험 상실일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1월~9월)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10월~12월)
1				Y( )								
2				Y( )								
3				Y( )								
4				Y( )								
5				Y( )								
6				Y( )								
7				Y( )								
8				Y( )								
9				Y( )								
합 계												

④ (2019)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해당시 √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뒤쪽참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산재보험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1월~9월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10월~12월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9월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10월~12월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구 분 (아래 √표시)	변경 전 기간 ~)	변경 후 기간 ~)
□ 산재 □ 고용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선납충당, ( )반환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①-1(산재)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취득일	산재보험 상실일	산재보험 ②연간보수총액(원)	③-1 근무지코드	고용보험 취득일	고용보험 상실일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1월~9월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10월~12월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월~9월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월~12월
1				Y( )										
2				Y( )										
3				Y( )										
4				Y( )										
5				Y( )										
합 계														

※ 신고항목

① 보험료부과구분
①-1 (산재)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②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③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
③-1 근무지코드(고용보험)
④ 2019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⑦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⑥) 및 그 밖의 근로자수(⑦,⑧)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선납충당, ( )반환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2) 보수총액신고서 세부 작성 방법

※ 사업장 현황 : 산재 ·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정보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기한은 3.16(월)까지입니다.
팩스접수 : 0502-123-4567

※ 신고방법은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		전화: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 업종	(요율:) 최종생산품(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작성자명 및 전화** :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시 연락 가능한 **작성자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정보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다만, 사업장정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①-1(산재)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취득일	산재보험 상실일	산재보험 ②연간보수총액(원)	③-1 고용보험 근무지코드	고용보험 취득일	고용보험 상실일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1월~9월)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10월~12월)
1				Y( )								
2				Y( )								

- 산재,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 표시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①보험료 부과구분란에 부호를 적지 않고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 자세한 보험료 부과부호는 2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부과 구분부호가 틀린 근로자 처리방법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를 정정 후 새로운 보수총액신고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1 (산재)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 '19년에 자진신고사업장과 부과고지사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근로자

※ 2019년도에 동일 법인(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내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고용종료신고 후 자진신고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 그 반대의 경우, ㉢ 부과고지사업장에 근로자가입정보 신고를 하고 자진신고 사업장과 병행하여 근무하는 ㉠, ㉡, ㉢ 유형 중 하나의 항목에라도 해당된다면 **"①-1" 항목 Y( )에 체크(V)**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근로자의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사용한 사업장(건설기계 관리사업(40010))의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는 '①-1 (산재)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항목의 Y( )'에 체크하여 하도급 건설현장에 투입한 근로자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설현장에 투입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보수총액신고 하셔야 합니다.

[②, ③ (연간보수총액)] 2019년도에 발생한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③-1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1월~9월)	③연간보수총액(원) (10월~12월)

※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 보수 기간별 분할 신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으로부터 보수총액 적는 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다만, 조세특례법제한법상의 비과세(⑱-11, ⑱-14, ⑱-15, ⑱-16, ⑱-31)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③-1 (근무지코드) 2019년도 마지막 날(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은 소멸일, 고용관계 종료된 근로자는 고용종료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중인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실제 근무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변경하실 필요가 없으며, 본사 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지 코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④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④ (2019)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해당시 ☑ 표시)

2019년도에 근로자 사용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괄호 안에 체크(☑)합니다.

※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직권부과 될 수 있으니 1년 이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일반사업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1월~9월	10월~12월

⑤, ⑥ 2019년도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신고서식의 ②,③의 고용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한 근로자, ⑦의 월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⑧의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9월	10월~12월	1월~9월	10월~12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중 아래에 해당하는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가.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일로부터 근로공백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이후부터 지급한 보수총액

※ ⑥-1이 있는 서식은 65세 이후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별도서식으로 발송되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별도 서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후 우리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지사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정산 방법

- 실업급여 :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에서 ⑥-1(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을 뺀 보수총액 [⑥-(⑥-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 [⑥]

[⑦, ⑧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그밖의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해당)	⑦ 월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고,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 미신고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고용(취득)신고 및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⑧ (산재 근로자가입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근로자 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연간보수총액(②,③), 일용근로자 보수총액(⑤, ⑥, ⑥-1)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누락 또는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구분

구분	설명	적용범위		예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미만)	산재	당연적용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고용	적용제외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일 또는 시간 단위의 고용계약 - 일급 형식으로 보수 지급	산재	당연적용	식당에서 일당을 지급받으며 10일간 주방 보조업무를 하는 근로자
		고용	당연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 개정

-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적용제외 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생업 목적 삭제)으로 '18.7.3. 이후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무조건 고용보험 당연 가입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⑧)수]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9년도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근로자 가입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⑤~⑧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②,③ 상용근로자는 제외)

보수총액 미신고 등 착오신고한 경우 조치사항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및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직권 산정·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⑩ (산재보험 업종),(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구 분 (아래 √표 시)	변경 전 기간(~)	변경 후 기간(~)
□ 산재 □ 고용		

❍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2019년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이 변경된 경우, 연간보수총액 **(②합계액+⑤+⑦+⑧)**을 변경 전·후 기간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고용보험 직능요율)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2019년 연도 중 고용보험 직능요율이 변경된 경우, 연간 보수총액**(③합계액+⑥)**을 변경 전·후 기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기간이 인쇄된 사업장만 적습니다.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정산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괄호( )안에 체크(V)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처리완료시「토탈서비스-빠른서비스, 팝업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하지 않은 사업장 중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보다 금액이 큰 경우 2등분하여 4월과 5월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 선납충당, 반환]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선납충당 ( )반환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2019년도 보험료 정산결과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충당 또는 반환 중 원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 선납충당 :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
❍ 반환 : 해당 월별보험료 충당 후 반환
※ 반환계좌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①-1(산재) 건설 벌목업 근무여부	산재보험			③-1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월~9월	10월~12월	1월~9월	10월~12월
1				Y( )										
2				Y(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54, 56, 58인 근로자만 별도 기재)
※ 노조전임자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미신고 또는 착오 기재된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 정정 후 우리공단 콜센터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노조전임자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예시

- 노조전임자 이△△의 2019년도 보수지급 및 보장자격 변동내용
  - '19. 1~9월 9,000,000원 비전임기간 (산재보험 부과, 고용보험 두 사업 모두 부과)
  - '19. 10~12월 3,000,000원 노조전임기간 (산재보험 부과제외,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과 제외)

▶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예시

성명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상실일	③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월~9월	10월~12월	1월~9월	10월~12월
김OO	56	16.2.5.		8,000,000	16.2.5.		9,000,000	3,000,000	9,000,000	-

※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다름에 유의

(3) 토탈서비스를 통한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전자신고)

[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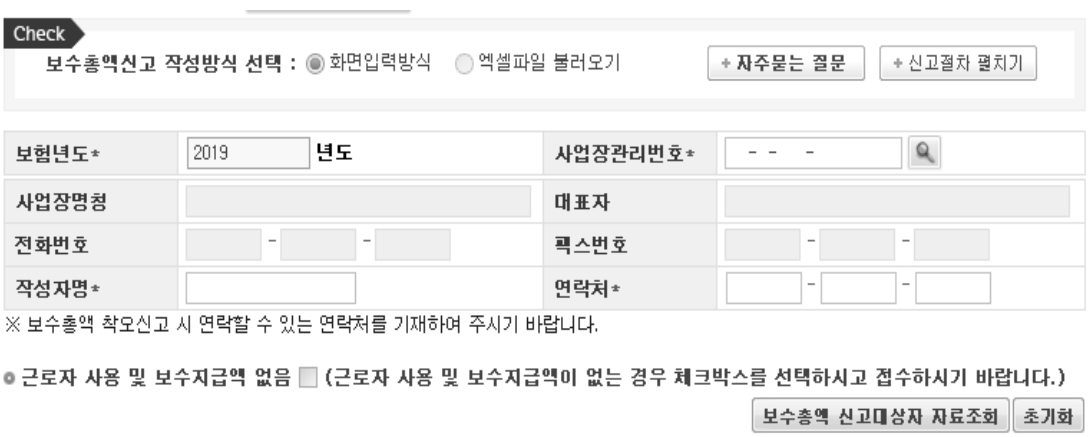


[① 토탈서비스 접속, ② 빠른서비스-보수총액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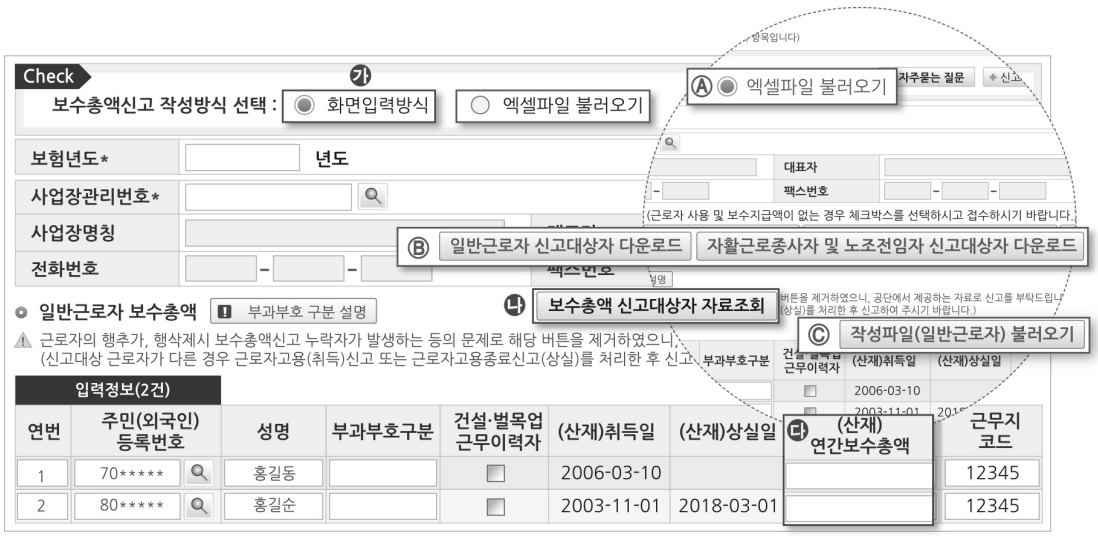


① **(토탈서비스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 후 사업주(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20년부터 회원가입 절차 폐지)

② **(빠른서비스-보수총액신고)** 로그인 후 **빠른서비스-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합니다.



[③보수총액 입력 – 화면입력방식, 엑셀파일 불러오기]



㉮ **화면입력방식 선택** → 관리번호 선택 →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

※ 보수총액의 착오입력 등으로 재입력이 필요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자료조회를 클릭

※ "입력정보 엑셀저장"버튼을 이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엑셀파일 불러오기 선택** → 관리번호 선택 → Ⓑ 신고대상자 파일 다운로드 및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근로자 정보는 다운로드 파일에 입력되어 있음) → Ⓒ 저장한 엑셀파일을 불러옴(입력한 보수총액이 화면에 나타남)

※ 임의대로 행 추가, 삭제 등의 수정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④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입력하기]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며 단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할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근로자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만 입력하세요.

		☐ 임채비해당	임채변경사유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임금채권부담금 연간보수총액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일용근로 중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지급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주의사항 :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에 임의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공제하면 안됨.

※ 실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력칸이 없는 사업장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보수총액신고 재구축 요청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정산 방법

- 실업급여 :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에서 ⑥-1(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을 뺀 보수총액 [⑥-(⑥-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⑥(일용근로자 전체) 보수총액 [⑥]

[⑤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입력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	

◦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상단의 일반근로자 제외한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고용인원을 기재하고 0명인 경우 0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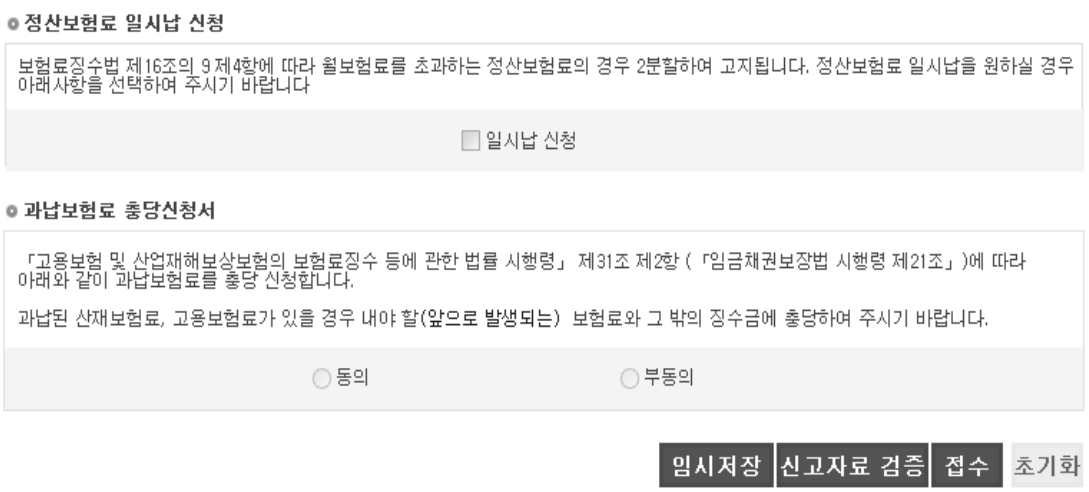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복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명)													

[⑥ (산재보험 업종)/(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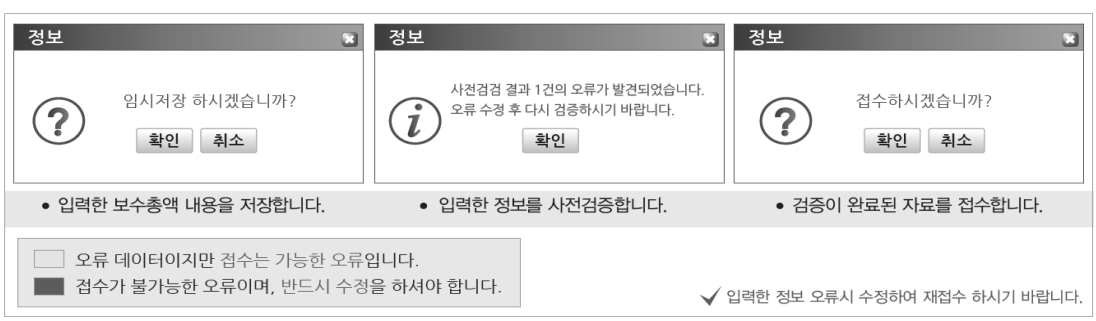


※ 2019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 또는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⑦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⑧ 정산 후 과납보험료 ( )선납충당, ( )반환]



[⑨ 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



[⑩ 보수총액신고서 접수 현황 조회]



※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단, 보수총액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전산 과부하로 인하여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는 불가하며 서식 출력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보수총액신고 Q&A

Q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수총액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우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적용단위 및 근로자 적용대상 등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공단에 별도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인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Q 이미 퇴사한 근로자나 휴직한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네. 보험연도 중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나 휴직한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도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기재시 휴직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Q 2019년도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보험연도 중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식의 「④ (2019)년도 근로자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에 체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전보근로자는 어떻게 보수총액신고하나요?

Answer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 기준으로 전보이전 사업장과 전보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전보이전 사업장은 종료(상실)일이 전보일, 전보이후 사업장은 고용(취득)일이 전보일에 해당

Q 휴직근로자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네. 휴업 · 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아니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정산대상이 아님)

Q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나요? 그럼 원천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네.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월 부과하는 월별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보수의 0.65%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인상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인상에 따라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별 연간보수총액을 요율변경 전, 후 기간별로 분할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홍길동 연간보수총액 1천2백만원일 경우, 변경전(1~9월) 900만원, 변경후(10~12월) 300만원 신고] 아울러 정산보험료는 요율변경 전, 후 각각 원단위 미만 절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월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 연도 말에 지급되는 상여금 등 근로제공 전체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배분 후 신고

Q 정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nswer 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단,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경우 「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정산보험료를 납부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네.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에서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빠른서비스와 팝업존 또는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충당 등으로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도 중 보수의 인상 및 인하 없이 보수총액이 그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험료율도 변동되지 않았는데 보험료 정산 결과 차액분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월보험료는 근로자 월별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정산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에서 10원 미만 원 단위 보험료를 버리고 산출하므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과고지사업장 정산(국세청 근로소득자료 활용)

(1)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의 기능

- 부과고지사업장 사업주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와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신고내역을 근로자별로 비교하여 신고내역이 다른 근로자의 보험료를 추가 정산하는 절차
  - 근로소득 중의 비과세 등 차액 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단순착오신고 등에 의한 차액 발생은 추가부과

(2)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 신청: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이의신청서에 해당 사유 및 금액 기재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지사 및 토탈서비스로 제출
  - 유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토탈서비스에서 스캔파일 업로드 가능)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 신청서**

팩스접수 :
토탈 임시아이디:

관리번호		사업장명		산재요율	/1,000	고용요율	/1,000
관할지사		작성자명	(전화:)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기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산재) (고용)	상실일 (산재) (고용)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②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③국세청신고 대비 차액보수(②-①)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 사유 및 금액 (⑤+⑥)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⑧사유코드	산재	고용	

구분	관리번호: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②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③국세청신고 대비 차액보수(②-①)			④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 사유 및 금액(⑤+⑥)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⑧사유코드	산재	고용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	65세이후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	65세이후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	65세이후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	65세이후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전체 보수	65세이후새로 고용된 일용보수
일용근로자 보수 계																
소정 근로시간 월60시간미만근로자 보수 계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 계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관할지사		
⑫근무처별 관리번호	⑬사업장명	⑭주민(외국인) 등 록 번 호	⑮성 명	보험료정산 대상 보수총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⑯취득일	⑰상실일	⑱연간보수총액	⑯취득일	⑰상실일	⑲연간보수총액
- - -		-							

- 신고항목
  - 이의신청서: ④ 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⑤+⑥), ⑤ 근무처별 분리(통합) 신고금액, ⑥ 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 ⑧ 사유코드
  - 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 내역서: ⑫ 근무처별 관리번호, ⑬ 사업장명, ⑭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⑮ 성명, ⑯취득일, ⑰ 상실일, ⑱ 연간보수총액
-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성명	주민 번호	취득일 (산재) (고용)	상실일 (산재) (고용)	①공단 신고 보수총액		②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③국세청신고 대비 차액보수(②-①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 (제외사유 및 금액)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⑧사유코드	산재	고용

  -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 작성: "①, ②, ③"란은 안내사항으로 금액을 수정하면 안 되며, 이의신청 사유에 맞게 "⑤, ⑥, ⑧"란을 작성합니다.

※ 공단 신고 보수총액을 근무처별로 분리 신고하거나 하나의 근무처에 통합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⑤근무처별 분리(통합)신고금액'**란의 **'산재' 또는 '고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 **'⑥비근로소득 등 이의신청'**란은 '〈사유1〉비근로소득', '〈사유2〉적용제외자', '〈사유3〉비과세소득'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이의신청서와 같이 송부한 "사유 코드표"를 참고하여 '⑧사유코드'와 사유코드별 제외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작성예시1)

⑧사유코드	산재	고용
221	2,000,000	
225		2,000,000

작성예시2)

⑧사유코드	산재	고용
106	10,000,000	5,000,000
318	1,200,000	600,000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사유 코드표

보수의 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금액**

사유코드	〈〈 사유 1 〉〉
	비근로소득
101	이자소득
102	배당소득
103	사업소득
104	연금소득
105	기타소득(우리사주_개인출자 등)
106	퇴직소득
107	양도소득
108	근로소득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109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일용근로자 보수 차액 소명만 해당)
110	A근로자 보수를 B근로자 보수로 착오 신고

사유코드	〈〈 사유 2 〉〉	보험료 부과범위			
	적용제외자	산재		고용	
		산재	임채	실업	고안
20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고용보험도 적용),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	○	×	×
203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	×	○	×
20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	×	×
20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	×	×
206	(산재)고용정보 미등록된 외국인근로자(고용 취득자는 고용보험 당연 부과)	○	○	×	×
20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	×	×
208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	×	×

※ 보험료 부과범위는 관할지역본부(지사)에 먼저 확인하여 고용정보(취득)자료 정정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코드	〈〈 사유 2 〉〉	보험료 부과범위			
	적용제외자	산재		고용	
		산재	임채	실업	고안
209	선원법, 어선원,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	○	○
210	현장실습생,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인 경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211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 해외특파원 등	×	×	○	○
212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	×	×	×	×
213	대표자 친족(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
214	성직자	×	×	×	×
215	항운노조원	○	○	×	×
216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휴직 공무원인 경우)	×	×	×	×
217	사외이사 및 비상근고문, 대표이사 ↔ 근로자 전환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
218	해외취업선원	×	×	○	○
219	고용보험 미취득 된 시간강사(고용 취득자는 산재고용 모두 부과 대상)	○	○	×	×
2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221	휴직·휴업수당, 육아휴직·산전후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	×	○	○
22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 임기제공무원	○	×	○	×
223	건설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 소속근로자	×	×	×	×
224	가내수공업 작업자(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
225	고용보험 타 사업장 취득자	○	○	×	×
226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5년 이내의 파견된 외국인으로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자	×	×	×	×
227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
228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229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	○	×	○

사유코드	〈〈 사유 3 〉〉
	비과세 근로소득
301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302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304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30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30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307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308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309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310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 학습보조비
31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313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314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315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급여
316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17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318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19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3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3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322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또는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3)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Q&A

Q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금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료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보수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금액으로 산정될 경우 일부 비과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단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가.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계속사업장 또는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 신고 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 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3%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진신고·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 1 기	1. 1. ~ 3. 31.	3. 31.
제 2 기	4. 1. ~ 6. 30.	5. 15.
제 3 기	7. 1. ~ 9. 30.	8. 15.
제 4 기	10. 1. ~ 12. 31.	11. 15.

- 보험 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3회로 조정
  -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사업 또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은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확정보험료

가. 의의

- 매 보험 연도의 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확정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해당 보험 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외주공사비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준 공사」의 총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의 공사금액(외주공사비)을 제외하고 산정

(3)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 :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납부 주체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업체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함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

다.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음

라. 직권조사징수

-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3 2020년도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 신고안내

가.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총액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대표자 보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

☞ 예시) ① 산재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인건비는 건설 현장으로 신고)

② 고용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전체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대표자 보수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보수를 제외

※ 2019.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3%p 인상(1.3%→1.6%)되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요율 변경 전·후로 분리하여 신고(1~9월, 10~12월)

나.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하도급 노무비율 ('20년 30%, '19년 30%)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는 포함하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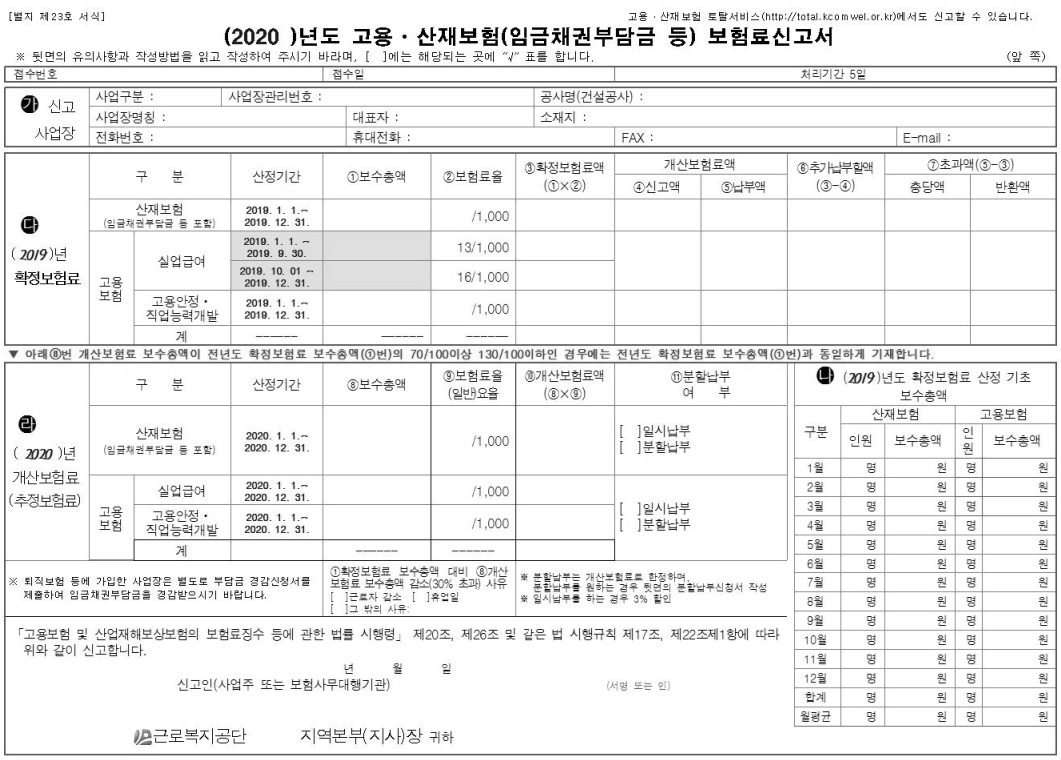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투입 시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가 원수급인으로 변경(고용보험 제외) 〉

※ 201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과 건설기계사업주간 임대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며 확정보험료 신고 시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는 실보수 또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로 산정하여 신고·납부(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실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실보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

※ 2019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확정보험료 신고 시 원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는 기준보수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수급인이 건설기계 특고와 계약한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기계 작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 특고에 대한 보험료도 신고된 것을 봄)

다. 보험료신고서 세부 작성 요령



[별지 제23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2019)년 확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개산보험료액 ⑤납부액	⑥추가납부할액 (③-④)	⑦초과액(③-③) 충당액	⑦초과액(③-③) 반환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9. 1. 1.~ 2019. 12. 31.		/1,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9. 1. 1.~ 2019. 9. 30.		13/1,000						
			2019. 10. 01~ 2019. 12. 31.		16/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9. 1. 1.~ 2019. 12. 31.		/1,000						
		계	------	------	------						

▼ 아래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2020)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일반요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 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20. 1. 1.~ 2020. 12. 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0. 1. 1.~ 2020. 12. 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0. 1. 1.~ 2020. 12. 31.		/1,000		
		계		------	------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일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확정하여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019)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인원	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인원	고용보험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1) 2019년 확정보험료

● ① 보수총액

㉯ 항목 2019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

구분	65세 전 고용된 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
실업급여	징수	미징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징수	징수

☞ 예시) ① 고용일 : 2012. 9. 7. 생년월일 : 1947. 9. 22.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② 고용일 : 2015. 1. 10. 생년월일 : 1950. 1. 15.
→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 부과됨

③ 고용일 : 2015. 1. 20. 생년월일 : 1950. 1. 15.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례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는 미부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됨

● ③ 보험료

③확정보험료액 = ①보수총액 × ②보험료율

※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고용보험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여 합산)

(2) 2020년 개산보험료

● ⑧ 보수총액

- 2020년도 1년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

사례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의 산정

•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800만원이더라도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
☞ 800만원 / 1,000만원 × 100 = 80% (확정보수총액 대비 70 ~130% 사이)

● ⑨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요율+출퇴근재해요율)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 건설업 36/1,000, 건설업본사 9/1,000
- 2020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1.3/1,000
- 202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6/1,000
-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0.03/1,000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⑪일시납부 및 분납여부 선택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일시납부 표시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면 3%의 공제 혜택 (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
-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분할납부 표시하면 해당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5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가. 의의

-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 '감액조정'은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감액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개산보험료 **감소** 규모가 이미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라.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마. 감액조정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됨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6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가. 의의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라.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마.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
  -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

7 건설업 확정정산

가. 개 요

- 확정보험료의 정산은 공단과 보험 가입자 간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액과 확정보험료액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반환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의 확정정산 전담부(팀)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정산 업무임

나. 정산절차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확정보험료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지역본부장에게 시달
- 지역본부장은 선정된 정산대상 사업장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선정사유와 정산 실시일자, 조사자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장에 통지(서면정산 실시 결과 적정할 경우 현지 조사 제외 가능)
- 지역본부장은 서면정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금(또는 보수)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현지정산 실시

다. 정산대상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확정정산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

라. 정산기준

-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분담금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지만 정산계획에 따라 정산대상 사업장 선정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전년도에 대하여 실시
-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실시 결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10%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1 목적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12. 7월부터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2 부과고지사업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 사업 규모 판단 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단

가입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 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연속(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신청) 불가
  - 다음연도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재판단
- 사업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단본부에서 사업에 지원제외 통지하면서 이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지원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월에 당해연도 보험료지원 신청서 제출

다음 연도 계속지원 사업에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상 215만원 미만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 지원중인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지원대상 보수 수준인 월평균보수(월별보수 총액) 215만원 미만에 해당시는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지원

(2) 근로자 보수 기준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 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2019년	2020년
지원 상한액	210만원	215만원

* 보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3) 지원 제외 사업 및 지원 제한 근로자

- (사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반기별 인사혁신처 고시)

●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은 연 2,838만원 이상 (과세급여액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연간 합이 2,100만원 이상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 단, 20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근로자 보수 수준과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지원 수준			적용시기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보수총액 215만원 미만	사업 규모	5명 미만	사업주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신규가입자 90/100, 기존가입자 30/100	2020년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주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신규가입자 80/100, 기존가입자 30/100	

※ 고용보험료: 사업주 1.0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8%), 근로자 0.8%(실업급여)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사업규모 판단: 해당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 '18.1.1. 이후 지원 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신규지원 및 기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 기존 가입자 지원은 2020.12.31.까지만 지원

(2) 보험료 지원 방법

-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보험료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국고지원금"으로 명시
- 해당연도에 신규 입사한 지원 대상근로자의 경우 지원 당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상한액 기준 110% 범위('20년도 기준 236만 5천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지원제외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수총액 미신고시 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 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
  - 연도 중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고용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지원은 환수금, 고용보험료 순으로 함. 잔여 미지급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받아 지급

다.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신규 입사자(피보험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 허용 → 근로자 제보 시 확인절차를 통해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기존사업) 보험료지원신청서(공통서식) 작성·제출
- (신규사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우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전자신청 : http://www.4insure.or.kr)

(2) 지원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가입누락,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통보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신청 다음월에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 기준 등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 통지
  -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시 지원신청(신청월부터 지원가능)

(3)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

- 월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

※ 최초 지원금 지급시 1회에 한하여 안내하고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안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근로자가 회원가입 후 정보조회〉보험료 정보〉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별 지원금 확인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에 대한 처리

- 보험료지원 대상 근로자 중 이중취득자는 지원금 산정 시 보류 되었다가 이중취득이 해소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3 자진신고사업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 건설업·벌목업 본사와,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을 포함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의 일원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2017.6.28. 시행)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지원제외 기준은 미적용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2) 근로자 보수 기준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2019년	2020년
지원 상한액	210만원	215만원

* 보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국내의 모든 사업의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미지원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 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

(3) 지원 제한 근로자

◉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은 연 2,838만원 이상 (과세급여액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연간 합이 2,100만원 이상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 단, 20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 제한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 근로자 보수 수준과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지원 수준			적용시기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보수총액 215만원 미만	사업 규모	5명 미만	사업주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신규가입자 90/100, 기존가입자 30/100	2020년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주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신규가입자 80/100, 기존가입자 30/100	

※ 고용보험료: 사업주 1.0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8%), 근로자 0.8%(실업급여)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사업규모 판단: 해당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자란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 '18.1.1. 이후 지원 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신규지원 및 기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 기존 가입자 지원은 2020.12.31.까지만 지원

(2) 보험료 지원 방법

●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본사(주된사업장) 관할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신청 해당연도의 국내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완납)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연 1회)

다.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본사(주된사업장) 관할 지사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된 지원 대상 근로자만 기재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기재하지 않음
- 자진신고사업은 월평균보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금 산정을 위해 근로자 인적 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월평균보수 = (보수총액/해당연도 총근무 일수) × 30일

(2)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법

● 보험료 납부 확인

- 지원신청 해당 연도의 국내의 모든 사업의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완납)
- (건설공사 및 벌목업) 지원신청 해당 연도의 공사종료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완납)

- 보험료 지원금 산정·지급
  -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 결정 후 지원금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신고일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신고기간 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사업 계좌로 지급

(3) 보험료 지원금 지급 통보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시 근로자용 통지서가 함께 동봉되므로 사업주는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1 환수대상

-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착오신고 및 피보험자격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는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보험 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 사업주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 보수액이 상한액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 3천원 미만 환수금 면제(2014. 9. 25. 시행)

- 환수금 산정 방법
  - 전액환수 :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지원한 지원금 전액
  - 일부환수 : 기 지원된 지원금 – 실 지원될 지원금
- 고용정보 신고로 사업규모가 5인 이상으로 된 경우 변경된 때로 소급하여 지원율 인하 및 차액 환수 다만, 사업규모가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고용정보 신고한 달부터 지원율을 인상함

2 환수절차

-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환수결정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환수금 체납 시 사업주(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 거래대금, 공사대금,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격신고 기한 준수
  - 지원금의 환수결정 및 통지는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이루어지며, 환수결정 통지 시 최초 납입고지 병행 처리

3 환수금 납부방식 및 방법

● 환수금 납부방식

-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로(OCR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환수금 납부방법

지로(OCR고지서)납부 및 가상계좌 이용 납부

인터넷 지로 (뱅킹)납부	- 납부은행 :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및 우체국 - 납부방법 :「인터넷지로홈페이지(www.giro.or.kr)(일반지로납부 선택)」 및「거래은행 홈페이지(지로 납부 선택)」로 접속 후 지로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 인터넷지로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 월~금 00:30~23:30 (다만,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금융회사별 납부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거래은행별 인터넷뱅킹 이용방법·가능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공과금 수납기 이용 납부	- 공과금수납기에 고용보험료 환수금 고지서를 절취하여 사용 - 이용가능은행 : 각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16:00 (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CD/ATM기 이용 납부	- CD/ATM기에서「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납부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7:00~22:00 (거래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토탈서비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회원가입 후 납부 -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지로홈페이지로 연계 납부
가상계좌 이용납부	-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능(이용시간) 은행영업일 07:00~23:00

제6편

산재 · 고용보험
적용 특례

-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가. 적용대상

-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나. 판단기준

►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2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가. 신청단위

-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

  ※ 해외파견 건설업의 경우 국내 건설업의 적용과 달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해외파견자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

나. 신청방법

-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다. 가입승인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닌 경우 승인 가능

3 보험관계 성립·변경 및 소멸

가. 보험관계 성립

-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임

  ※ 단,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 현재 파견예정자의 경우에는 출국일이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나. 보험관계 변경

-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성립 후 승인받은 해외파견자의 명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바로 제출해야 함

● 변경신고사항
- 보험 가입신청시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

다. 보험관계 해지

●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 이후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보험관계의 소멸일
- 해외파견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해외파견자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으로 공단이 해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료율) 사업의 종류 및 국가(지역)에 구분 없이 단일 요율을 적용
※ '20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5.3/1,000(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3/1,000 포함)

나. 보험료의 신고 · 납부

● 부과고지 대상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별 보험료 = 월평균 보수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신고서 신고(제출) 후 자진 납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행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현장실습생의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함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3 보험료 산정

-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봄

Q '훈련수당 등 모든금품'의 산정방법?

Answer 사업주가 현장실습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학교 등 사업주가 아닌 자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됩니다.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3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함

제도(법) 시행일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 (2020. 7. 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전속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전속대리운전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27종)

불도저	롤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천공기
굴삭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항타 및 항발기
로더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자갈채취기
지게차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살포기	준설선
스크레이퍼	콘크리트피니셔	골재살포기	특수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살포기	쇄석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공기압축기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제3호·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인 사람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퀵서비스 기사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

가. 소득: 월 1,242,100원

나. 종사시간: 월 118시간

※ 종사일 별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의 합산(휴게 및 대기시간을 포함)

□ 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

가. 소득 및 종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ㅇ 소득은 소속(등록)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 ㅇ 종사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 ㅇ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이나 종사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시행일: 2020. 1. 1.

▣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신고 및 신청

가. 보험관계 성립

(1) 신고 사유 및 시기

- 일반근로자의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단, 일반근로자의 고용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불필요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1) 신고 사유 및 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 · 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2) 입직일

-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
- 법 시행일 이전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법 시행일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

(3) 이직일

- 이직 또는 사망에 의한 경우: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끝난 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입직일의 전날

(4) 신고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입·이직신고서(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1) 주된 사업장 결정의 의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제125조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함

(2)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 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
- 계속하여 둘 이상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소득·시간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을 변경 신청 할 수 있음

(3) 주된 사업장의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게 된 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속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의 종사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 연도마다 2회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의 변경 신청 가능
  - 변경 전 사업장의 이직일은 변경신청일,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입직일은 변경신청일의 다음날이 됨

(4)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 적용

- 둘 이상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결정 원칙의 예외
-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의 종사 직종과 먼저 입직한 사업장의 종사 직종이 서로 다르고 노무 제공 시간과 장소 등이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직종을 모두 적용(중복 입직)
- 중복 입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서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하나의 직종이 금융보험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1)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의무적용 대상이므로 입직신고 이후에 적용제외 신청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직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제외됨

(2)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음
- 재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하는 해의 다음 보험 연도 1. 1.부터 재적용
  ※ '20. 1. 1.부터 재적용을 원하는 경우 '19. 12. 31.까지 공단에 재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보변경 신고

(1)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사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변경 신고 가능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1) 신청 사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취소 또는 정정 신청 가능
- 입· 이직 등 정보의 취소 및 정정의 효과는 사실관계에 맞는 일자로 소급하여 발생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나. 보험료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함

다. 보험료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가입자 판단 및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19.1.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

❖ 전속성 및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 (전속성)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속성 인정
  -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별/일자별로 전속성 판단
- (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

❖ 보험료 산정

-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징수법 제13조)
  - 개별실적요율: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의 산재보험료 산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 개산보험료는 「총공사금액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산재보험료율」로 산정

※ 건설기계 특고의 작업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신고된 것으로 봄

- 확정보험료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 공사 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로 산정

※ 건설기계 특고의 작업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신고된 것으로 봄

※ 단, 원수급인 건설기계 특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입

■ 부과고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을 일할계산하여 해당 업종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183,000	72,76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84,000	56,13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 적용범위 확대(시행일: '20. 7. 1.)에 따른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 예정

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가.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 「산재보험법」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3개 직종 종사자
    * 13개 직종 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험에 미적용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님

나. 혜택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 가능

※ 상세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다. 제출자료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라. 신청 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확인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 기피, 적용제외 신청 강요, 허위 날인 후 적용제외 신청 등의 위법 사례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로 신고 가능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소기업 사업주의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하는 건설업 원수급인 및 건설업 하수급인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대상 확대

구 분	2019년	2020년(시행일: '20.1.7.)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금속제조업 등 12개 업종 국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

3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가입 신청서 상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에 답변 필수
  -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제 사업주)이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 배우자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실제 사업주 여부 확인: 실제 사업주 확인서(자필 확인서)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소기업사업주중 관련 법에 따른 면허 보유가 필수인 직종은 자격요건을 추가 확인
    ① 명의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
    ② 실제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운전(조종) 등 면허 보유 여부
-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공동 대표인 경우)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 보호가 가능
  -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에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호되지 않음
  - 한편, 건설업 등 각 개별 공사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별로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함
-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보험관계 성립일 :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중·소기업 사업주의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특정 업무(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됨

※ 특수건강진단 절차: (중·소기업 사업주) 건강진단대상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 (공단 소속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검진 의뢰 ⇒ (진단기관) 검진 시행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및 건강진단 비용 청구 ⇒ (공단 소속기관) 건강진단 비용 지급(공단이 별도 부담)

4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공단이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5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중 · 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따라서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율도 변경됨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
  -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소멸하는 경우와 등급 변경 신청 기간 내 등급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그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
-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20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61,600	68,720
2등급	2,480,301	82,677
3등급	2,899,002	96,633
4등급	3,317,703	110,590
5등급	3,736,404	124,547
6등급	4,155,105	138,504
7등급	4,573,806	152,460
8등급	4,992,507	166,417
9등급	5,411,208	180,374
10등급	5,829,909	194,330
11등급	6,248,610	208,287
12등급	6,667,320	222,244

통상적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신설

1. 개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2. 직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퀵서비스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3. 기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차량 등의 차고를 보유한 경우 적용 제외
4. 적용: 주거지 내 차고를 보유한 경우 이외에는 통상적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이 적용
5. 비고: 적용 제외일 경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만 부과(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3/1,000 미부과)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1 제도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나. 보험가입자

- 자활급여 수급자에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자활보장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 한편, 비영리법인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보험가입자임

- 또한, 광역자활공동체 또는 지역자활공동체 중 자활수급자 스스로 사업체를 형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동체가 보험가입자가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12. 8. 2.부터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

다.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 기초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

3 고용보험법 특례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됨
  -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하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가 타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통상 순위에 따름
    (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우선)

구 분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자활사업 및 타 사업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활급여 수급자 & 타 사업 근로자	타 사업

나. 보험관계 적용 및 보험료 산정·부과 등

- 보험가입자
  -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자체 수행)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 (위탁 수행)이 보험가입자임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위탁기관을 사업주로 봄
- 보험료 산정·부과
  - 자활급여 수급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자활급여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가입된 고용보험 관리번호에 대하여 월별 보험료를 부과·고지
- 사업주의 보장자격 변경신고 제도
  - 자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자격(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외 수급자)에 따라 실업급여 사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장자격 변동 여부 관리 필요
  -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업 참여 도중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보장자격이 변동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변경된 보장자격을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④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나. 가입요건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갖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됨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

가.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대상 자영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
    ※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 가입신청서에는 보험료 및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보험관계 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며, 보험관계 성립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됨

나. 보험관계 변경

- 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가입 승인 후 보험관계(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

3 보험관계 소멸

가. 보험관계 소멸 사유

① 당연 소멸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19.1.15.부터 적용)
- 임금근로자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희망시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해지

② 임의 소멸

-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가입연도 중에도 해지 가능)
- 보험관계에 대한 공단의 소멸 결정·통지

나.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일 당일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보험가입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보수액을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됨

나. 보험료 산정방식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0.25%)

다. 보험료 납부방식

- (부과고지 방식)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2020년도 등급별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단위 : 원)

등급	기준보수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	36,400	4,550	40,950
2등급	2,080,000	41,600	5,200	46,800
3등급	2,340,000	46,800	5,850	52,650
4등급	2,600,000	52,000	6,500	58,500
5등급	2,860,000	57,200	7,150	64,350
6등급	3,120,000	62,400	7,800	70,200
7등급	3,380,000	67,600	8,450	76,050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 '12. 1. 21.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경우의 2020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은 2,600,000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50%를 3~4등급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지 원 대 상 : 1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지 원 수 준 : (1~2등급)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50%를 3년간 지원
  (3~4등급)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3년간 지원
- 신청 및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www.sbiz.or.kr)

5 실업급여 지급

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나. 실업급여 일수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1,092천원 ~ 2,028천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다.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및「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www.kcomwel.or.kr

제7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 과태료

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 제45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6조의 10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종료·전보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단,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

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관련 과태료

- 위반행위의 종류
  - 미신고 : 취득 등의 신고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도 미신고에 포함
  - 거짓신고 : 신고한 취득 등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시근로자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단,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를 합산
    ※ 건설현장은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업장 정보상의 공사금액 기준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경과]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 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 이상~1년 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 이상~6월 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즉시 부과 유예
1월 이상~3월 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행위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2 가산금

- 가산금은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반한 경우 범칙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자진신고 사업장에 적용)
- 가산금 산정방식
  -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다음 보험연도 3월31일 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금의 50% 경감
- 가산금 부과의 예외
  - 가산금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연체금

- 연체금이란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법상의 지연이자 및 벌과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

● 연체금 산정방식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 단, 체납된 보험료의 90/1,000(210일)을 넘지 못함

▶ 법정 납기 경과 1일 ~ 30일까지는 일단위로 보험료의 1/1000 부과
▶ 법정 납기 경과 31일 ~ 210일까지는 일단위로 보험료의 1/3000 부과

● 연체금 부과의 예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 금액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보험급여액의 징수

가. 의의

●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나. 징수요건

●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급여징수액 :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50/100 해당액
- 징수금 상한액 설정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급여징수액 : 재해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100 해당액
  - 징수금 상한액 설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100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함

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 가입을 게을리한 기간과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금을 각각의 요건에 맞게 징수하나, 그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상한액을 설정
  ※ 상한액 설정으로 보험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유의
  ☞ 상한액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최초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봄
-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

제8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원칙
-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 제5장 이의신청
-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 제7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 제8장 신청서 접수
- 제9장 참고사항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원칙

1 사업 추진 배경

- ’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 **’20년에도 계속 지원**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확대보다는 내실화 및 사후관리에 초점

* (’17년) 6,470원 -16.4% 인상→ (’18년) 7,530원-10.9% 인상→ (’19년)8,350원-2.9% 인상→(’20년) 8,590원

2 2020년 사업 기본 원칙

-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일괄 다시 제출받아 요건 재검증**
  -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을 현행화

* ’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최저 임금 준수 확인서만 징구)

- **지원대상 조정**
  - ’19년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년도 장기요양 수가(2.74%)가 최저임금(2.9%) 수준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 **지원배제**로 **환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20년 돌봄사업 페지에 따라 **지원 종료**
- ’18~’19년 지원기간 도중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주)**,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진반납**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20년도**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신청 가능**
  -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19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0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제2장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1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개요

- (지원)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
- (지원 제외) 30명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고소득 사업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이거나 임금체불 발생 사업주 ③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⑥최초 지원대상월 이후 고용조정 사업주(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예외)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②55세 이상 고령자 ③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근로자, ④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은 30인 이상도 지원

2 [사업주 요건1] 30명 미만 사업주

가. 정의

- 지급을 희망하는 월(이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일 것
  -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업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

*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일 이전 특정월을 지급희망월로 선택하면 해당하는 달부터 지원금이 지원됨

나. 산정방식

-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 휴직근로자를 포함하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제외

* 상용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해당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주 신고(근로계약서 확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지원이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은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다. 산정단위

- (일반원칙)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는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
- (예외)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제1호에 따름
  - 법인의 지사·지부·지회·협회 등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독립성 여부는 '비영리법인 회원단체 독립성 인정기준' 에 따라 판단)
  - ①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을 소명(입증)하는 경우 해당 지사 단위로 산정
    - ▸ 위와 같이 규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해당 법인 단위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은 지원 제외하고, 고용보험이 별도로 성립되어 있어야 함
- 지급희망월 기준 사업규모가 지원기준(30명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희망월을 재선택하여 다시 신청 가능

라. 지원 제외

- (인위적 감원 기업 제외) 사업규모 판단기간 중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상실코드 23번)등 인위적 감원 인원(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간, 퇴사일 기준)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
- (인위적 분할 기업 제외) 지원기준 사업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기존 30명 이상의 사업을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한 경우 지원 제외

마. 지원 이후 근로자수 변동시 지원 기준

- 지원대상이 된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명 이상이 되더라도, 29명까지는 계속 지원
  - 30명 이상 신청시 [지급금액이 많고 → 월평균보수가 낮고 → 입사가 빠른 →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3 [사업주 요건1-1] (예외)취약계층 중심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1965.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군 및 목포시, 군산('19.4월 현재)
  -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에 따라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는 특정 시·군·구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 現 고용위기지역 + 전남 해남군('19.5월 현재)

4 [사업주 요건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정의

- 개인: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법인: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고소득 사업주 판단 기준

-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최초 신청 도는 재신청 심사시 1회 판단하고,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산한 과세소득금액으로 확인
  - (개인사업주) '20.1.1.~8.31. 신청자 → '18년 자료, 9.1. 이후 신청자 → '19년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법인사업주) '20.1.1.~6.30. 신청자 → '18년 자료, 7.1. 이후 신청사 → '19년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단계에서 사업주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 (개인사업주) 8월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18년도분 국세청 신고 자료(국세청 확인필), 9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19년도분 국세청 신고 자료(국세청 확인필)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 (법인사업주) 6월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18년도분(3월·6월·9월 결산 법인은 '18년도에 신고 의무가 있는 당기분) 국세청 신고 자료(국세청 확인필), 9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19년도분(3월·6월·9월 결산 법인은 '19년도에 신고 의무가 있는 당기분) 국세청 신고 자료(국세청 확인필)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 판단예시
•'20년 6월 이전 지원금 신청한 6월 결산 법인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17.5.1.~'18.6.30. 기간(당기)을 '18. 9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아 요건 판단
•'20년 7월 이후 지원금 신청한 6월 결산 법인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18.5.1.~'19.6.30. 기간(당기)을 '19. 9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아 요건 판단

5 [사업주 요건3]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정의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개인) 공동사업주를 포함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공개된 명단 지원 제외
  - (법인) 법인등록번호 기준 공개된 명단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제도 개요

◇ 명단공개대상(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명단공개 기준일(매년 8.31)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 내용 및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3)
①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및 법인의 명칭 · 주소), 3년간 체불총액
② 방법: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③ 기간: 3년 (8.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후 매년 1~2회 공개)

나. 임금체불 사업주 처리 방법

- '20년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공개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20년도 중 임금체불로 명단공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20년에는 지원 배제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 종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18년 이후 임금체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달(전산입수달 지원월분)부터 연도 내 계속 지원 중단
  -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은 안정자금이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시설주) 등에게 지원되므로 용역업체 사업주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계속 지원

6 [사업주 요건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지원 제외되는 공공기관 기준 동일)

7 [사업주 요건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가. 정의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배제

나. 지원배제 범위

(1)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직접지원+바우처)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의 경우, 그 사업(주) 지원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정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②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종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③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 단,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사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④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2) '20년 지원에서 배제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복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타 사회서비스기관 지원시 재정중복 여부 확인 필요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우선 배제하고,
  - ① 노인장기요양 이외에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및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 등을 수행*할 경우,

    *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혼재되어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지원
  - ②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확인 후 지원

※ '18~'19년 지원하였던 노인돌봄서비스기관은 돌봄서비스사업 폐지로 지원 종료

(3) 국가 등에서 인건비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의 경우

-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 지원시' 인건비 지원으로 간주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배제

  * 지자체 인건비 재정지원 확인서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

  - (배제방법)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은 위 기준이 마련된 '19.9.1.자로 소급 적용되며, '20년에 새로이 인건비 전액 지원 사업이 확인되거나, 추가로 인건비 재정지원 노동자가 발견될 경우, 지원 중단과 병행하여 '19.9.1.부터 지원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
  - (예외) 예산지원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8 [사업주 요건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가. 정의

-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시급 8,590원) 이상으로 지급될 것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최저임금 산업범위와 동일

나. 근로자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방법

(1) 상용·단시간 근로자

- 신청 세부내역상 기재된 정액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8,590원 이상일 것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입력이 불가함에 유의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후 재신청이 가능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 월급제(주40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월급 1,795,310원인 경우 : 1,795,310원÷209시간=8,590원
- 주급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48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주급 412,320원인 경우: 412,320원÷48시간=8,590원
- 시급제: 시급으로 판단(최저시급 8,590원)

(2) 일용근로자

- 일당이 (일평균근로시간×8,590원) 이상일 것(8시간 이상 근무 시 일당 68,720원 이상)
  - (일당)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보수총액(과세소득)'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 월보수 및 월근로일수는 매월 초일 ~ 말일 단위로 산정
  - (일평균근로시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일평균근로시간'
    -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8시간으로 계산

(3) 수습근로자

-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습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 이 기준을 충족한 수습근로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 일 것

(4)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 (기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①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②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리 방법

-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자 요건이 아닌 사업주 요건
- 최초 심사를 통과하고, 지원도중 최저임금 위반자가 확인된 경우
  - 우선 시정기한을 정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토록 보완 조치,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급중단 및 기 지원된 전체 지원 금액 환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18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달(전산입수달 지원월)부터 연도 내 계속 지원 중단 및 최저임금 위반 사유 발생월부터 기 지원된 전체 금액 환수
  -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은 안정자금이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시설주) 등에게 지원되므로 용역업체 사업주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계속 지원

라. 유의 사항

- 2018.6.12.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음에 유의

최저임금법 개정('18.6.12) 주요내용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사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 A 근로자 월급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 40,000원, 교통비 40,000원, 시간외 수당 100,5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 계 1,955,5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 0원

☞ 상여금 125,000원은 2020년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1,795,310원의 20%(359,062원)를 초과하지 않음

☞ 식대·교통비 80,000원은 2020년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1,795,310원의 5%(89,766원)를 초과하지 않음

➡ 1,650,000원 ÷ 209시간 = 7,895원 〈 8,590원(최저임금 위반)

9 [사업주 요건7] 지원금 지급기간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를 행한 경우임
    ▸ 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월(상실일 기준)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공동주택은 현장단위로 중단)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퇴사일 기준) 소명절차 없이 연도 내 지원중단
  * 상실사유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고용조정 비해당 사유서와 입증자료 제출받아 확인 후 지원재개 가능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 상당기간 지속하여 발생하므로 연도 중 1회만 해당사유 소명하면 고용유지 의무조항 면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① 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③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④ 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기타 사업 환경이나 경영사정상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유지의무 면제)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포함)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부과 조항 면제

제3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1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개요

- (지원대상 근로자) ①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일 것(일용근로자는 일당 99,000원 이하) ②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일용근로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일 것) ③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④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할 것 ⑤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2 [근로자 요건1] 2019년도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 일 것

가. 근로자별 지원대상 기준

(1) 상용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

- '20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 일 것
  - * 보수(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 월평균보수('20년도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입·퇴사월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함

> 보수총액 = 소득세법상 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소득)
> = 총급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계)

-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소득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

- 월평균보수 215만원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여야하며,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일 것**

(3) 일용근로자

- 일당이 99,000원(최저임금의 120% 수준) 이하일 것
  - 일당은 [보수÷월근로일수]로 산정
  -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인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지원기준을 상회하므로 지원 제외

나. 신청이후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을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

- 지원금 신청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갱신(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정 지원 여부 검증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환수 조치 예정(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의 110% 수준인 23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

다.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주

- 보수총액 미신고시 7.1.(대상기간 '20.6.1.~6.30.)부터 지 중단, 7.31.까지 '19년 보수총액을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

3 [근로자 요건2]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상용·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반드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도 지원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
  -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지원 제외
  - 1개월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

4 [근로자 요건3]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개인) 공동사업자 포함,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동거여부,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5 [근로자 요건4]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기준) 지급 대상 근로자 중 '20.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2019. 10월 이후 입사자는 해당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확인방법) 고용보험DB에 신고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월평균보수 확인
  - 신청시 최초 1회 확인하되, '20.1~4월은 전전년도 월평균보수, '20.5월부터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예외)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임의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연장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경영악화에 따른 변동 상여금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로 전년도 보수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 위와 같은 정당한 임금수준 저하사유에 대해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근로자 요건5]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5인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이나 적용제외 근로자(합법외국인, 3개월 미만 초단시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원
-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보다 강화된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병행 지원예정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

***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30%)**

*** '20년 신규가입자도 '19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
(1~4인 사업장) 90%, (5인이상~9인 사업장) 80%

▲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

*** '20년도 신규가입자는 5인미만 60%, 5인 이상~10인 미만 50% 감면, '19년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제4장 지급액 산정 및 지원금 지급

1 지급액 산정

가. 보수수준 215만원 이하 상용근로자

- (원칙)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 정액 지급
- (일할계산) 근로자가 월 중간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산식) 지급액 = 9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입사(복직): 입사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시(휴직)일까지 일수

나. 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원칙)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20년 1월 지급분은 기 신고된 소정근로시간 및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20년 2월 지급분부터는 세부내역 신청 이후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18년 월평균보수	'19년 월평균보수	'20년 월평균보수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177,900원 이상 ~1,573,770원 미만)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306,170원 이상 ~1,745,150원 미만)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343,720원 이상 ~1,795,310원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785,270원 이상 ~1,177,900원 미만)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870,780원 이상 ~1,306,170 미만)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895,810원 이상 ~1,343,720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27,190원 이상 ~785,27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62,820원 이상 ~870,78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73,250원 이상 ~895,810원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327,190원 미만)	10시간 미만 (362,820원 미만)	10시간 미만 (373,250원 미만)	미지원

- (일할계산) 근로자가 월 중간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지급구간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신고된 월평균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환수 조치
  - 소정근로시간 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연도 지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차액만큼 환수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환수관련)〉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20년 월평균보수	월 지급액
40시간 이상(1,795,310원 이상)	90,000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343,720원 이상~1,795,310원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895,810원 이상~1,343,720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73,250원 이상~895,810원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373,250원 미만)	미지원

다. 일용근로자(월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지원기준)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 (일평균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일평균근로시간 비례 지급
  - (산식) 지급액 = 월근로일수 구간별 지원액 × (일평균근로시간/8)

라.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1) 추가지원 금액

- 일반 지원 금액 + 2만원
  -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추가지원 금액까지 포함하여 일할 계산

(2) 5인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20.1월분 지급시 '19.11~'20.1월 근로자수 산정 후 2월에 1월분 추가지급 or 일반지급 결정 후 지급(이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순연하여 확인)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특별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

(3) 지급기간 도중 근로자수 증감(변동)시 처리 방법

- 추가↔일반지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변동기준에 따라 지원금 산정

사례 **근로자수 감소하여 '20년 5월에 일반지원 → 추가지원으로 변경된 경우**

- 4월까지 지원받던 근로자와 5월 이후 추가로 신청한 근로자 모두 11만원 지급
  (5월 이후 추가 신청 근로자만 11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님)

2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시기('직접수령' 방식인 경우에 해당)
  - (최초 지원금) 신청서 처리완료(결재완료) 후 3일내 지급
  - (2회분 이후 지원금)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

3 지원금 지원방식

가. 사업주 지원방식 선택

-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시 '직접수령'(계좌지급) 또는 '4대 사회보험료 대납'중 하나를 선택
- 지원금 지원방식중 지원금 전액에 대해 하나의 지원방식만 선택가능(일부 직접수령, 일부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으로 선택 불가)
- 최초 신청시 선택한 지원방식은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변경 불가

나. 직접수령 방식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시 기재한 계좌로 직접 펌뱅킹 입금하는 지원방식
  - (최초 지원금) 지급희망월부터 심사월 전월분까지 지원금 일괄 지급
  - (2회차 이후 지원금) 전회차 지급월 다음달부터 정기 지급일 전월까지 지원금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계좌 명의
  - (개인) 개인 사업주 명의 계좌
  - (법인) 법인 명의 계좌
  - (공동주택 위탁업체) 입주자 대표 명의 계좌

다.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 공단이 사업주의 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안분하여 대납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고지하는 지원방식
  - 보험료 대납후 남은 잔액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주 계좌로 반환
-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선택시 ①사업주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사업주로부터 환수(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하지 않음) ②지급희망일자 선택 불가(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고지일정에 맞추어 지원금을 건보공단에 입금하여야 함)

4 지원금 지급 후 절차

- 사업장의 최초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결정시 지급결과 통보
  - 2회차 이후 지원금 지급내역은 신청인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지원금 지급 후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급 결과 통보
  -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지원금 지원정보 공시

제5장 이의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결정을 한 소속기관(경영복지부)을 거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제기 업무 프로세스 】

소속 기관장	- 지급(부지급) 결정통지
사업주 (20일 이내)	-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서 제출
소속 기관장 (5일 이내)	- 의견서 첨부, 관할 지역본부에 송부
관할 심사위원회 (20일 이내)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신청인 및 소속기관장 각각 통지)
사업주	-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등 구제절차

※ 공단 이의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 따름

● 이의신청 대상

- 지원비대상 결정, 지원금 부지급(일부 부지급 포함) 결정, 지원중단 결정, 지원종료 결정,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지원금 상계,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

제6장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1 부정수급 처리

가. 부정수급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처리)
  - (유형 1) 근로사실이 없거나, 임금지급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신청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유형 2) 노사가 담합하여 사업장 분할 설립, 실 급여내역 조작, 실 근로일수 조작 등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맞추어 지원 신청한 경우
  - (유형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단은 ①부정수급 의심기업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정기 및 수시점검 ③부정수급 신고 온라인 사이트 개설 ④부정수급 전담반 신설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재 조치 강화

- 사무대행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환수금 발생시 1회 경고(경고 시 추가적인 발생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명시)하고, 다음연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20년 시행 이후 최초 발생부터 적용)
  * '19년 지도·점검 결과 환수금이 발생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20년 점검 대상에 포함
- 2회차 환수 발생시 그 사유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분

- (반환명령)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
- (강제징수)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 (환수금 등의 분할납부)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형사고발) 부정수급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고발
    - ▸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 사업주가 근로자와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로서 공단 소속기관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급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종료시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제한

2 부당이득금 처리

가.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민법 제741조)
  - (유형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형2)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지급절차에 의해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뒤,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부당이득금 환수방법

- 환수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 인원에 대해 착오 지급된 지원금 환수 결정(환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 지원금부터 환수)
  - 해당 사업장에 다음회차 지원금이 있는 경우, 다음회차 이후 발생하는 지원금에서 차감
  - 해당 사업장에 다음회차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명령 후 납부고지 및 미납시 강제징수
- 사업주별 월 단위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1인 기준 11.1%)인 경우 환수결정 대상에서 제외

제7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1 공동주택 특별지원 개요

- 해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년도에도 특별지원절차 지속 운영
- 고용안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

2 공동주택 개념

-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이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판단

- 공동주택 사업규모가 30명 미만이면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대상 근로자 전부 지원, 30명 이상이면, 30명 이상이면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 공동주택 사업규모 판단방법
  - 공동주택 사업규모는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함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문주택관리업체가 아닌 일반 용역회사에 경비·청소원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업체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용역업체)별로 30인 여부 판단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4 지원금 특별지급 절차

- 신청은 사업주가 하되, 위탁업체(용역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경비·청소원이 아닌 경우(시설장비·조경 등)에도 동일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관리유형	관리방식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체
자치관리 (직영)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관리	•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용역위탁)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등 위탁관리	• (신청)위탁업체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분리 위탁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여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시설·장비 등 분리 위탁	• (신청)각 위탁업체별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 +위탁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일부는 위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위탁업체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 특히, 경비·청소원 고용안정을 위해 법상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등)와 위탁업체 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제출(필수)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5 신청방법

- 신청주체와 지원금 수령주체가 다른 점 등 특수성을 감안, 공동주택 관련 신청서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 ①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 접수(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서류 이송 처리)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비·청소원 여부(직종)를 신청서식에 체크

6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사업주 요건 중 최저임금 준수 기준 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

  *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피보험자격상실 코드23번)시 지원종료(별도 소명 불가)
- 해당 근로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월평균보수 215만원이하, 1월 이상 고용유지, 특수관계인 제외,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보수수준 유지 등)
-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부정수급금 반환 책임 발생시에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책임이 있음
  - 다만, 실제 지원금을 수령한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므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자진반납'토록 조치하고, 미반납시에는 사업(주)에게 반환조치 하되, 사업(주)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제8장 신청서 접수

1 신청 개요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자동 지급(소급신청 가능)
  - 단,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12.14.까지만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서 하여야 함
- '19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 준용하여 '20년 신규 지원 신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세부내역이 포함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공단 고유 서식) 제출

2 신청 서류 및 첨부서류

가. 신규 신청

(1) 공통사항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별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2) 근로자별 신청 서류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19년 기 지원 사업장 및 '20년 신규 지원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공단 고유서식)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와 병행 활용
  - '20년도 신규 성립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용 별도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위 대상자별로 각각 해당 신청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작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 서류 제출
- 퇴사자
  -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매 익월 15일까지 제출

나. 근로자 추가 지원 신청

- 최초 신청 이후 신규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으로 신고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신고

다. 지원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사항 신고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 사업장 정보 변경(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신청 이후 기본급 등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제출 →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지원구간별로 월 지원금이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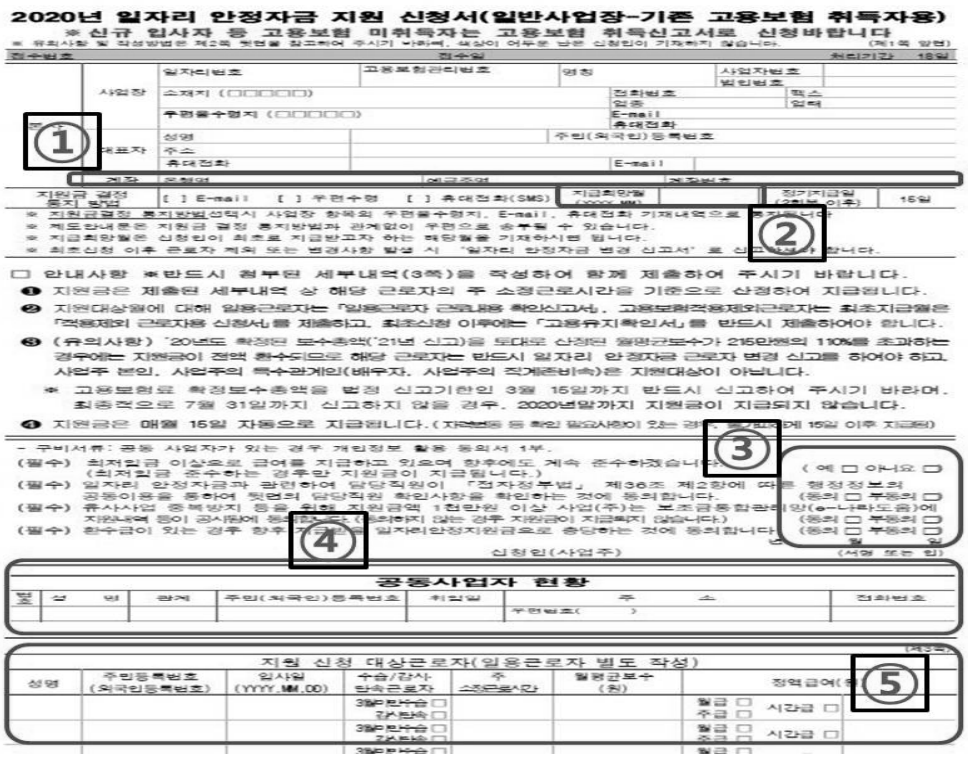
  * 미변경시 보수총액 신고자료 확인 등으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20년도 지원금 정산 결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접수일 기준, 사업주 단위)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0년도 확인 다음달부터(확인월분)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 ('20년 2회 실시, 3월·9월)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19. 8.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1

1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19년 기지원 사업장 및 '20년 신규지원 신청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와 병행 활용)

서식개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내 안정자금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 신청
서식(세부)	기 가입근로자에 대한 안정자금 신청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일반사업장-기존 고용보험 취득자용)

※ 신규 입사자 등 고용보험 미취득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로 신청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사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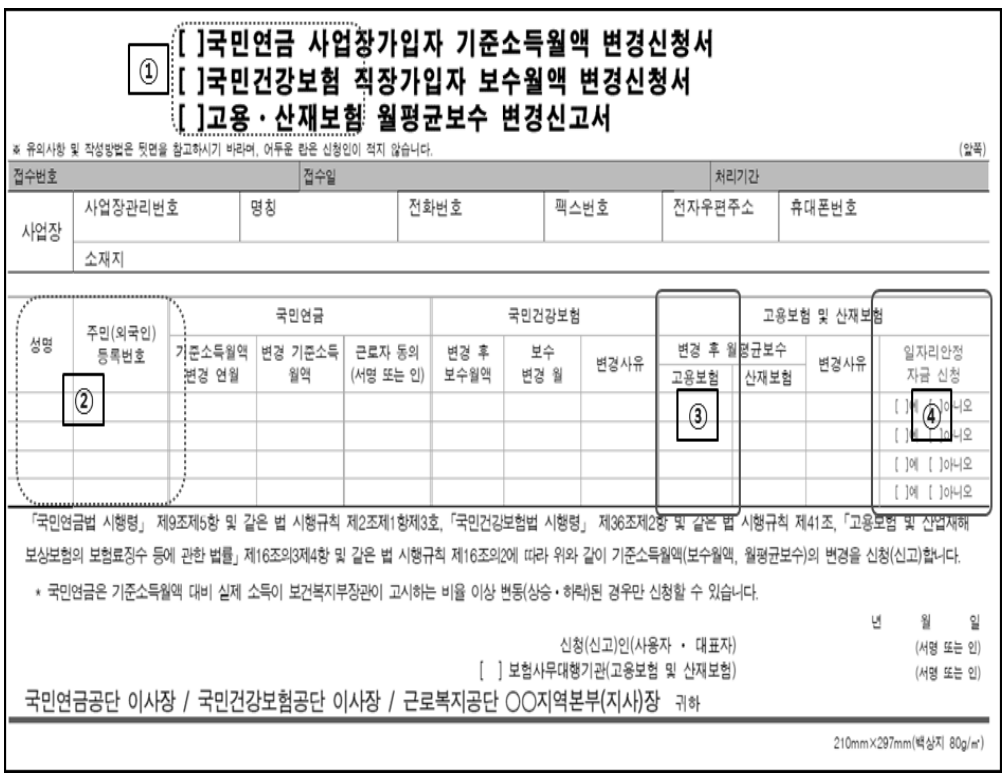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기재사항 설명	① 안정자금 입금 계좌번호 ② 최초 지급희망월 체크(해당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30명 미만 여부 판단) ③ 최저임금 준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 여부 체크(필수) ④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⑤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체크 및 정액급여 기재 ※ 주소정근로시간: 1주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 ※ 월급제는 월정액급여, 주급제는 주 단위 정액급여, 시간제는 시간급으로 기재
유의사항	▶ 신규 입사자 등 고용보험 미취득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로 안정자금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2

2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존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최초 신청이후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

서식개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내 안정자금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 신청
서식(세부)	기 가입근로자에 대한 월평균보수변경 신고 및 안정자금 신청



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	변경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사유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
②								③			④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기재사항 설명	①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여부 체크 ※ 타 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시 타 보험에도 체크 가능 ②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명 및 주민번호 등 기재 ③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변경 후) 기재 ④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여부" 체크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④)는 **'20년도에 지급받을 보수*의 총액을 해당 개월수로 나눈 금액임** *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매 신청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첨부하여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3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최초 신청이후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

서식(세부)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 내용, 월평균보수 신고 및 안정자금 신청



①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및"작성방법은"제2쪽을"참고해"부지기"바라며,"해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원)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자격취득부호	국민연금 특수직종부호	국민연금 직역연금부호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건강보험 보험료 감면부호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직종명/부호	고용보험 직종부호	고용보험 주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고용보험 부과구분(해당자만) 부호	고용보험 부과구분(해당자만)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	②		[ ]예 [ ]아니오	③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⑤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4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종별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급	외국인 등록일	외국인 국적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체류기간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여부
피부양자		⑥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기재사항 설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 여부 체크 ※ 타 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시 타 보험에도 체크 가능 ② 신규 취득 근로자명, 주민번호 기재 및 대표자 여부 체크 ③ 월평균보수 기재 ④ 해당 기재사항 기재 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체크(예 또는 아니오 반드시 체크) ⑥ 취득신고서상 피부양자 내역이 있으면 추가 입력(건강보험만 해당)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④)는 '20년도에 지급받을 보수의 총액을 해당 개월수로 나눈 금액임** * **'20년도**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적정 보수 신고토록 안내 필요 ▶ 매 신청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첨부하여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4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서식(세부)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의 가입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① 4대보험 가입 희망 체크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험료 전자고지 신청	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휴대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②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 ] 신청 [ ] 미신청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③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최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④ 주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⑤ [ ]있음 [ ]없음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주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쪽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재사항 설명	① 가입 희망하는 4대보험 체크 ② 4대 사회보험료 합산(총계) 고지 신청 여부 체크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체크(두루누리 지원사업)** ④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여부(150명 미만 기업은 우선지원대상임) ⑤ 산재보험 가입 시 신고일전 산재발생 여부 체크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체크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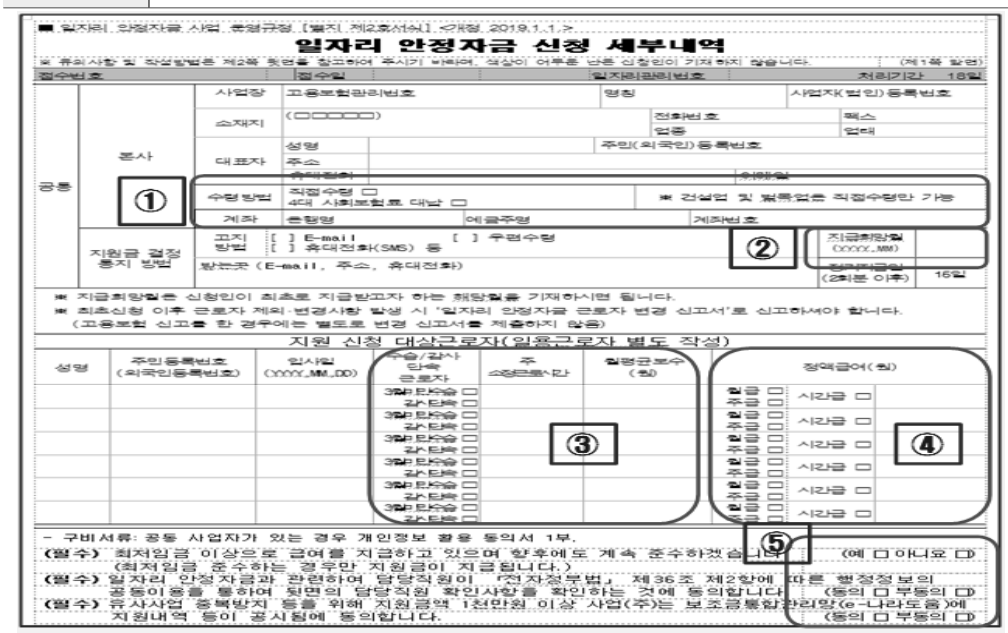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5-1

5-1 고용보험 신고서와 합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부속서류를 추가로 제출

〈필수 부속서류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 최초 지원신청하는 사업장만 제출, 이후 근로자 지원추가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식개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별 지원요건 확인 자료
서식(세부)	사업주 지원금 지급관련 정보 및 지원대상 근로자별 기재사항 기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이 어두운 단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 접수일 | 일자리관리번호 | 처리기간 18일

공통 — 본사 ①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 업종	팩스 / 업태
대표자	성명 / 주소 / 휴대전화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 4대 사회보험료 대납 □	※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휴대전화(SMS) 등 / [ ] 우편수령 / 발신처 (E-mail, 주소, 휴대전화)	②	지급희망월 (□□□□.MM) / 지급신청일 (2회분 이후) 16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MM.DD)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만수습 □ 감시단속 □	③		월급 □ 주급 □ 시간급 □ ④
			3월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구비서류: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⑤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까?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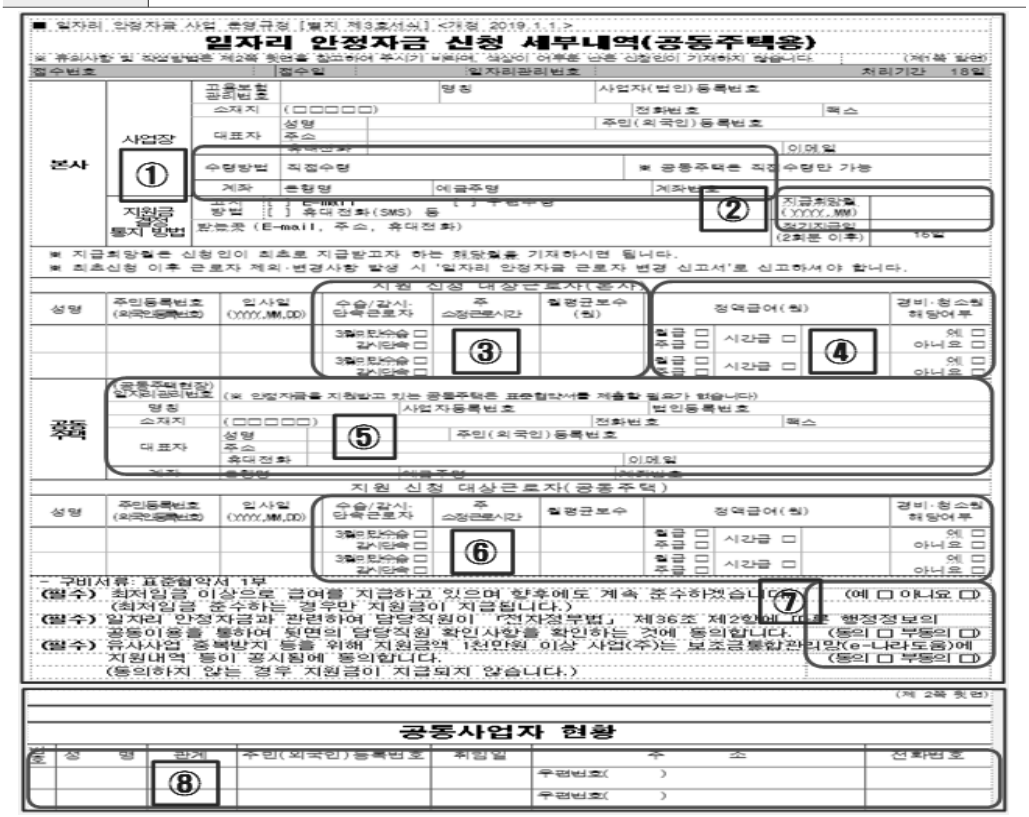
번호	성 명	관계 ⑥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기재사항 설명	① 안정자금 수령방법 체크 및 입금 계좌번호 - 직접수령: 사업주 계좌로 입금, 대납: 건강보험으로 지급하여 보험료에 충당 ※ 수령방법은 지원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불가 ② 최초 지급희망월 체크**(해당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30명 미만 여부 판단)** ③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 소정근로시간 기재 ※ 주소정근로시간: 1주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임 ④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 월급제는 월정액급여, 주급제는 주 단위 정액급여, 시간제는 시간급으로 기재 ⑤ 최저임금 준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 여부 체크(필수) ⑥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 제출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5-2

5-2 필수 부속서류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공동주택)〉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근로자 지원 추가 시 동일 서식 이용).

서식개요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서식(세부)	사업주 지원금 지급관련 정보(계좌번호, 수령방법, 지급시작월 등) 지원대상 근로자별 기재사항 기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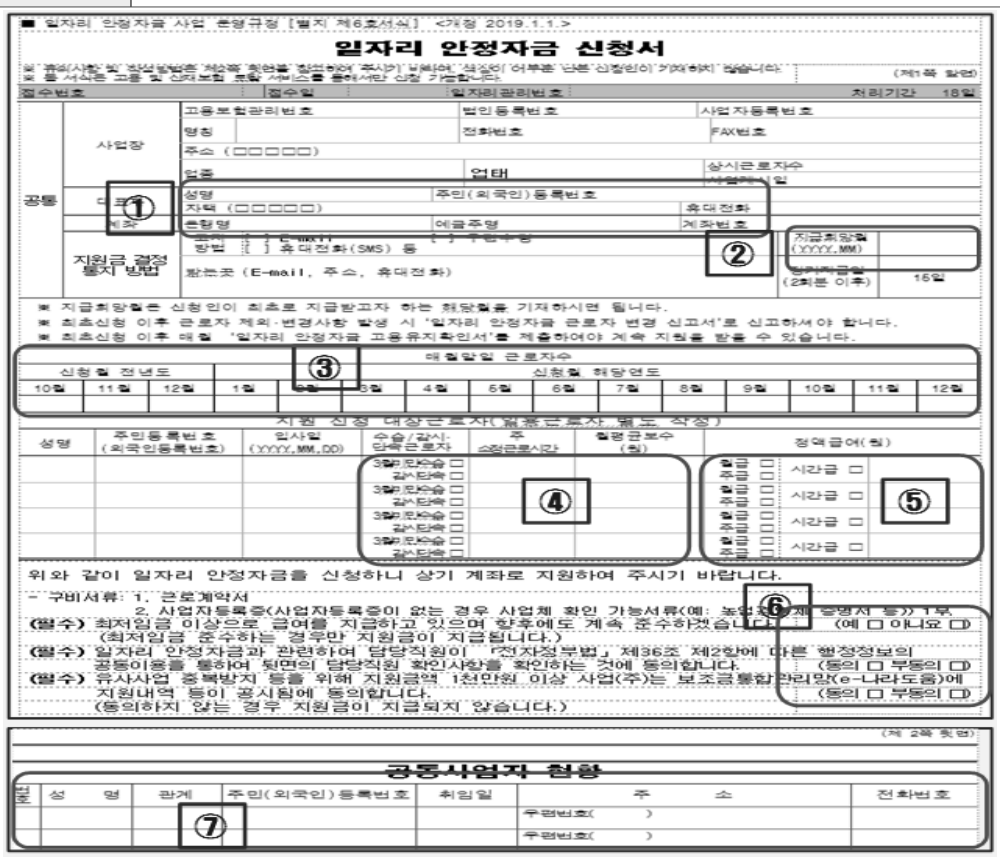
공동사업자 현황

기재사항 설명	① 입금 계좌번호**(공동주택 위탁관리하는 경우는 공동주택별 ⑤에 기재)** ② 최초 지급희망월 ③~④, ⑥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 소정근로시간 등 기재 * 주소정근로시간: 1주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임 *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⑤ 공동주택별 사업장내역 기재,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등으로 지급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 기재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필수) ⑧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표준협약서"** 첨부 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 제출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및 작성 요령 6

6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도 서식)으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근로자 추가 시 동일)

서식개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서식(세부)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주, 4인이하 개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신청서식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제1쪽 앞면)

접수번호 | 접수일 | 일자리관리번호 | 처리기간 18일

공통 —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FAX번호 / 주소 (□□□□□) / 업종 / 업태 / 상시근로자수

① 수령계좌: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예금주명 / 계좌번호

②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 ] E-mail [ ] 휴대전화(SMS) 등 /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 지급희망월 (YYYY.MM) / 일자리지급일 (2회분 이후) 15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최초신청 이후 매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매월말일 근로자수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월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 수습 □ 감시단속 □	④		월급 □ 주급 □	시간급 □ ⑤
			3월미만 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 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 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상기 계좌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1부.

⑥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⑦			우편번호( )	
					우편번호( )	

기재사항 설명	① 안정자금 수령방법 체크 및 입금 계좌번호 ② 최초 지급희망월 기재**(해당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30명 미만 여부 판단)** ③ 지원신청일 이전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 기재 ④,⑤ 수습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 소정근로시간,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필수) ⑦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 사업체 등록자료(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허가증 등),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자료 첨부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서" 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 제출필요

제9장 참고사항

1 2020년도 주요 개정안

<table>
<tr><th>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r>
<tr><td>월평균보수
지원기준 상향</td><td>▸(상용)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일용) 1일 기준 97,000원 이하
▸(선원) 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td><td>▸(상용)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일용) 1일 기준 99,000원 이하
▸(선원) 월평균보수 266만원 이하</td></tr>
<tr><td>지원금액
조정</td><td>▸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td><td>▸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td></tr>
<tr><td rowspan="2">단시간 및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합리화</td><td>▸단시간근로자
<table><tr><th>주 소정 근로시간</th><th>월 지급액</th></tr><tr><td>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td><td>12만원</td></tr><tr><td>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td><td>9만원</td></tr><tr><td>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td><td>6만원</td></tr><tr><td>10시간 미만</td><td>3만원</td></tr></table></td><td>▸단시간근로자
<table><tr><th>주 소정 근로시간</th><th>월 지급액</th></tr><tr><td>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td><td>8만원</td></tr><tr><td>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td><td>6만원</td></tr><tr><td>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td><td>4만원</td></tr><tr><td>10시간 미만</td><td>미지원</td></tr></table></td></tr>
<tr><td>▸일용근로자
<table><tr><th>월 근로일수</th><th>월 지급액</th></tr><tr><td>22일 이상</td><td>13만원</td></tr><tr><td>19일 이상~21일 이하</td><td>12만원</td></tr><tr><td>15일 이상~18일 이하</td><td>10만원</td></tr><tr><td>10일 이상~14일 이하</td><td>8만원</td></tr></table></td><td>▸일용근로자
<table><tr><th>월 근로일수</th><th>월 지급액</th></tr><tr><td>22일 이상</td><td>9만원</td></tr><tr><td>19일 이상~21일 이하</td><td>8만원</td></tr><tr><td>15일 이상~18일 이하</td><td>7만원</td></tr><tr><td>10일 이상~14일 이하</td><td>5만원</td></tr></table></td></tr>
<tr><td>지원 대상 조정</td><td>▸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규모제한 없이 지원)</td><td>▸지원 제외</td></tr>
<tr><td>고소득 사업주
지원기준 강화</td><td>▸과세소득 5억 초과자</td><td>▸과세소득 3억 초과자</td></tr>
</table>

구분	2019년	2020년
계속 지원 사업장 재신청	▸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	▸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아 요건 재검증 후 지원 * 30인 미만(이상) 여부, '20년 계속 지원 희망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20년 월평균보수, 고소득 사업주 등 필수 내용 확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 연 1회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	▸ 연 2회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
정산금 발생 최소화	▸ '19년 4분기 지급 전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여 재검증 후 지원	▸ 매년 4분기 지급 전 재검증 후 지원 * 근로자 퇴사, 월평균보수 등 변동사항 재신고에 한하여 4분기 지원
지원금 과수령 사업장 환수 규정 마련	〈신설〉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존 신고된 월평균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환수 조치** -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구간이 달라지고** 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연도 지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차액만큼 환수**
최저임금 검증 기준 강화	〈신설〉	▸ **최저임금 검증방법** - **(사전)** ①신청 세부내역상 소정근로시간, 정액급여 등으로 판단, ②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확정** 사업주 지원 배제 - **(사후) ①정기 지도·점검**(매분기)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필수, **②감독국 노무관리지도와 연계**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지도(감독국 협조)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강화	〈신설〉	▸ **지도·점검 불응** 시 **해당 연도 지원액 전액 환수** 조치
		▸ 지도·점검 사업장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점검표 제출** 등으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 확대 *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 강화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강화	〈신설〉	▸ 사무대행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환수금 발생 시 1회 경고**(경고 시 추가적인 발생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명시)하고, **다음연도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20년 시행 이후 최초 발생부터 적용) - 2회차 환수 발생 시 그 사유가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구분	2019년	2020년
최저임금 위반 유죄확정 사업주 조치	〈신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18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달(전산입수달 지원월분)부터 **연도 내 지원 중단 및 최저임금 위반 사유 발생월부터 지원된 전체 금액 환수**
최저임금 위반 유죄확정 사업주 조치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및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지원 여부 검증**

2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조치

❑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집행

- '19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9년도 예산으로 집행
  - 따라서 '19년 회계연도 마감과 함께 교부금액 잔액과 이자를 고용노동부로 반납 조치('20년 지원금은 '20년 1월중 교부 예정)
  - 정산·마감조치 이후 근로자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20년 지원금에서 차감(상계) 후 지급
    * '20년 지원금에서 차감(상계)하더라도 동 금액은 '19년 지원금에 대한 환수금이므로 차감된 금액은 국고로 세입조치

❑ '20년 1월 지급분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해당월의 계속 근로 확인 후 다음달에 지원되는 특성 및 요건 재검증('19.4분기) 절차로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제출을 통해 지원 요건이 확인된 사업주(재검증 비대상 사업주* 포함) 에 대하여 지원
  * 재검증 비대상 사업주 : 2019.8.26.이후 신규 사업장(상용근로자 기준 전체 지원근로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 따라서, '20년 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소속으로 '19년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일용 및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20년 지급금액 기준으로 지원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최종 제출 기한: 2020. 2. 28.

※ 지급대상 기간이 '19.11월 이전은 '19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적용제외 및 일용근로자 지원

- '19년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예외적으로 '20.1.31.까지 접수하여 처리

제9편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1 보험사무대행제도

-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71년~)

  ※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4,5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 제공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

2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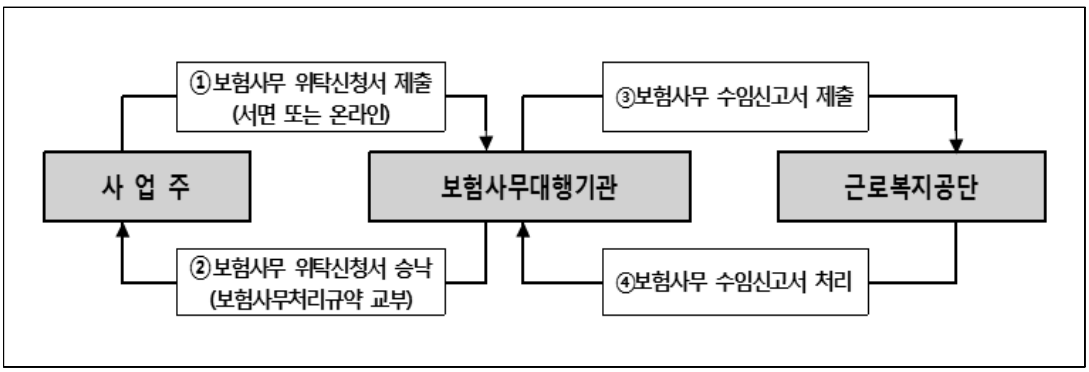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보험사무

-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 사무
-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령(실업자 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보험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절차도



①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

②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승낙(불승낙) 통보 및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교부

※ 불승낙 통보: 보험사무대행 가능 사업장수 초과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정에 따라 불승낙 통보될 수 있으며, 불승낙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위탁계약에 관한 세부약관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와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공단에 신고(보험사무 수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제출)

④ 공단의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개시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절차

인가교육 이수
(개인세무사에 한함)

- **교육대상:** 「세무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교육방법(교육시간):**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4시간)
- **교육과정:**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등 3개 과정

인가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필수 첨부)

- **신청서 제출 방법**
  -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구비서류 스캔 파일 첨부)
- **구비서류**
  - 공통: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표준 규약(안) 예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
  - 법인 또는 단체: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인가서, 정관 또는 규약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 개인세무사: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제출서류내용 확인
(공단)

- **인가자격 및 요건 확인**
  - 법인·단체: 정관(법인), 규약(단체)에 보험사무대행 및 회계·감사 규정 포함
  - 공인노무사: 직무경력 2년 이상
  - 개인세무사: 인가교육 유효기간(5년) 이내, 직무경력 2년 이상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의 사무위임 약관)**
  - “표준 규약(안) 예시”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출 장 확 인
(공단)

- **보험사무 처리능력 판단**(적정 사무공간, 사무인력, 사무기기 등)
- **수임대상지역 적정여부 판단**

인가여부 결정
(공단)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여부 결정 및 인가서 발급(통지)**

※ 인가서를 발급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토탈서비스 로그인
(total.kcomwel.or.kr)

- **사무대행기관 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대표자, 소속직원(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필수) 명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보험사무 수임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승낙 / 불승낙**(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주)
- **보험사무 수임신고**(보험사무대행기관 → 공단)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우회, 산재재해자단체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노무·세무·회계법인, 법무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세무사

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개인세무사에 한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8호) -

가. 인가교육 실시기준

- **(교육대상)**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교육방법·시간 등)** 인가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 방법 중 선택 가능, 전체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진행하되 대면 교육은 수강률 80% 이상, 온라인 교육은 진도율 100%인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시간의 인정 등)** 인가교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에 받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인가교육 세부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가교육의 세부과정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1. 「세무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연수교육
  2. 「변호사법」 제85조의 연수교육
  3.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1항의 연수교육

≪ 인가교육 세부과정 ≫

연번	세부과정 구분	시간	교육방법
1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1시간	대면 또는 온라인
2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1시간	
3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일자리안정자금 등)	2시간	

※ 교육대상자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세부과정명, 교육일자 및 시간 등을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확인받아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인가교육의 실시

- **(교육기관)** 인가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위탁교육기관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교육계획 공고 등)**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된 교육계획 또는 변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1.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주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온라인 교육은 연중 상시)
- **(교육신청)** 교육대상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강신청(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수강신청으로 갈음)
  1. 교육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교육대상자의 세무사등록증 사본
  3. 교육대상자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대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강결정)**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시작 전일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
- **(교육이수의 확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

- **(교육이수 유효기간)** 교육이수의 유효기간은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5년
  ※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가교육 이수 효력 상실
- **(교육비용)** 한국세무사회 회원 무료(비회원 1인당 56,000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당 16,000원(회원 여부 무관)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작성 →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나. 첨부서류

(1) 공통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대표자 및 보험사무대행 업무담당 직원 보안서약서 포함)
  ※ 아래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규약은 인정되지 않음

1.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 등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책임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근로자고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험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 법인 또는 단체

-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 받거나, 단체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법인 설립 허가증·인가증, 민간단체 등록증 등)
- 법인은 정관, 단체는 규약 사본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감사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을 하고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직무개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

(4) 개인세무사

-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하고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
- 인가교육 이수 확인증

4 인가신청시 유의사항

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처리기관 및 인가일자

- **(처리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장이 처리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국적·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수개의 지사 (지역본부)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장이 처리
- **(인가일자)** 공단이 인가를 결정한 날

나. 법인·단체의 지점 또는 지부의 인가

- **(인가요건)** 법인·단체가 각 지역별로 지점 또는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점 또는 지부별로 인가 가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명시
  - 단체: 규약 등에 지회·지부로 명시
  - 공통: 지점 또는 지부(지회) 운영규정 등에 인사·회계 등의 독립성 명시
- **(신청방법)** 인가신청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상법」 제13조에 따라 등기된 지배인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 가능

  ※ "대표이사 또는 등기된 지배인"이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하되,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점 인가시 수임사업장 승계 가능 여부**

보험사무 위탁계약은 보험료징수법의 규율을 받아 보험가입자와 특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이 아님)간에 체결되는 법률관계이므로 동일 법인 내에서 기존 인가된 본점 보험사무대행기관(A)과 보험가입자간에 체결한 보험사무 위탁계약의 효력은 별도 인가된 지점 보험사무대행기관(B)에 승계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사무위탁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3자간(A, B, 보험가입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령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별도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B)이 기존에 지점으로서 관리하였던 사업장들에 대한 보험사무를 수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보험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수임대상지역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사무인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수임대상지역(특별시·광역시·도 등)을 지정하여 인가신청
  - 전국을 포괄하거나, 보험사무 처리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지역은 수임대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험사무 처리능력 : 보험사무의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 사무공간, 사무기기, 사무인력 등
  - 다만,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지부 또는 지점이 있는 등 보험사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을 수임대상지역으로 인가 가능

라. 등록면허세 납부

- 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는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에 해당하므로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는 “제4종” 면허에 해당
  - **(신고 납부)** 새로 인가를 받거나 변경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은 인가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등록면허세가 재부과됨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가. 변경인가 신청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 변경인가 신청 사항 : 1. 수임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나. 변경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 합병시 승계 여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나, 서로 다른 두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자동 승계는 불가한 바, 기존 수임사업장은 사무수임 해지신고 후 신설(흡수합병) 법인으로 새로이 사무수임 신고하여야 함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조직변경에 따른 기관으로서의 존속여부

공단으로부터 인가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A)의 대표자가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B)으로 이동한 경우, 각각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서로 별개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A)으로 보험사무를 위탁하였던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표자가 이동한 보험사무대행기관(B)의 명의로 계속하여 대행할 수 없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공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며, 통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 ※ 위탁사업장 중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2,3,4분기 납부서는 공단 본부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위탁 자진신고 사업장 10개 이상일 경우)으로 발송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장에 납부서 전달 및 납부 독려
  - ※ 위탁사업장 중 부과고지 사업장(건설업·벌목업 외)의 월별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자료, 신고·보고 사항 등을 요청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

- 가산금, 연체금, 보험급여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의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함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3.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서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음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인가취소" 대상에 해당

참고 개인정보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개인정보의 주체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
-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은 타법률에 의해 보호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임원 현황, 자산 또는 자본의 규모, 주가, 영업실적, 납세실적, 영업비밀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

나.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별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

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본원칙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함

- 관리적 측면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물리적 측면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기술적 측면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비밀번호 관리,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 보유 관리수칙

- 비밀번호는 분기 1회이상 변경
- 인사이동 시 PC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는 즉시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해 9자리 이상 사용
- PC 등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나 파일 전송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수기 문서 보관시 유의사항

- 일과 후 개인정보 기록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관
- 사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수기 문서는 즉시 파기(이면지로도 사용 불가)

③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고객의 개인정보의 과도한 조회 등 이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므로 업무 범위를 넘는 열람 불가

④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 공단 지사(지역본부)는 관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 장부·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관련 세부사항(실시기간, 대상선정, 점검항목 등)은 매년 별도로 계획 수립

- 지도·점검 결과 보험사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가취소, 경고, 주의, 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실시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행정처분

가. 인가취소

-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5항)**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 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 [별표 5])**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처분내용	처 분 기 준
인가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3. 경고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나. 경고·주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 [별표 5])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처분내용	처 분 기 준
경 고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별표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분의 "부정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외에 별도 대행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 (단,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6월 이상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4.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단, 당해연도 3월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5.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단,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6. 위임사업주와 별지 제43호 서식의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목의 하자 있는 사무위탁서를 첨부하여 사무수임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해당 건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가. 위임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사무위탁서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임의로 서명하거나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한 사무위탁서 다. 보수총액신고서(보험료신고서) 등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
주 의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별표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분의 "부정인가"인 경우 제외)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2월 이상 6월 미만 기간 동안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 3.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법정 신고기한 내 보험료를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단,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4. 당해연도 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단,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사업장에 한한다) 5. 처분기준 경고 제6호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나 그 건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될 경우 각각 처분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회수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2항 [별표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구 분	회 수 기 준
부정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부정운영	1. 보험사무를 위임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허위로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3자와 사업주 간에 체결된 사무위탁서를 넘겨받아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착오지급	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경우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지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종류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등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4호) -

가.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지급기준)** 자진신고 사업장 위임사업주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 **(지급시기)** 반기별(연 2회)
- **(납부실적 산정)** 해당 반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1) 피보험자관리대행 지원금

- **(지급기준)**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세변경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등'이라 함)를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4명 이상 신고시 16,000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연 4회)
- **(신고실적 산정)** 해당 분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자신고등의 신고실적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되, 동일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와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실적은 1명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동일 분기, 동일인에 대한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건으로 산정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별로 월에 1명으로 산정

(2) 보수총액신고대행 지원금

- **(지급기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지급하며, 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에 따라 소멸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상시근로자수 규모	신고기한	지원금액	지급시기
5명 미만	매년 3월 15일까지	18,000원	연 1회
5-30명 미만	매년 3월 15일까지	24,000원	연 1회
소멸보수총액신고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10,000원	소멸시 1회

※ 소멸보수총액신고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원

(3)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 **(지급기준)**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병행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6,000원(10명 이상 신고시 10,000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연 4회)
- **(신고실적 산정)** 해당 분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병행 신청하고 정상 지급결재된 사업장에 지급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별로 월에 1명으로 산정

다. 적용촉진장려금

-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우 지급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한쪽만 성립신고 하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 아님
  ※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자만 사용 사업장처럼 산재만 가입하는 대상은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적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
- **(지급시기)** 최초 성립시 1회

라.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 피보험자관리대행 지원금

- **(지급기준)**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의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
- **(지급시기)** 연 1회

(2) 적용촉진장려금

- **(지급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가입일로부터 1년간 4회까지 지급)

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할 때 예산 부족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급
  (1순위) 피보험자신고등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을 병행하여 신청한 경우
  (2순위)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3순위) 상시근로자 10명~29명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가. 신청시기

-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 이후 신청 가능
-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분기 중간 월 15일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15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 1분기(1,2,3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5월 15일부터 1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2분기(4,5,6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8월 15일부터 2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3분기(7,8,9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11월 15일부터 3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4분기(10,11,12월) 사무대행업무 수행 → 내년 2월 15일부터 4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무대행기관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금 구분, 신청년도, 신청분기 선택 → 공단산정자료 조회 → 조정 또는 추가 → 접수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공단산정자료가 기본 제공되며, 조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첨부자료 없이 접수 가능
  - 공단산정자료의 조정 또는 추가가 필요할 경우 행추가, 행삭제, 신청명세 업로드 등을 사용하여 처리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접수
  - 지원금 종류별로 각각 지급신청 하여야 함
- **(서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지역본부) 팩스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첨부서류: 지원금별 세부 신청명세 자료 필수 제출

다. 지원제한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라. 소멸시효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항에 따라 지원금별 매 반기 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마. 기타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지급기준 요약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4호) -

□ 지원금 종류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지원금 종류		대상	지원기준	지급주기	금액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경우 (자진신고사업장에 한함)	▸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반기	위임사업주당 16,000원
피보험자관리 등 대행지원금	피보험자 관리대행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한 경우		분기	위임사업주당 12,000원 ※ 4명 이상 신고시 16,000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	▸ 일자리안정자금 병행 신청한 경우		분기	위임사업주당 6,000원 ※ 10명 이상 신고시 10,000원
	보수총액 신고대행	▸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 대행		연간	위임사업주당 18,000원(5명 미만), 24,000원(5명 이상)
		▸ 보험관계 소멸 시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한 경우		소멸시	위임사업주당 10,000원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대행		성립시	위임사업주당 40,000원

□ 지원금 지급 사례

※ 산정조건: 근로자 수 5명 미만(50개소), 5~30명 미만(50개소), 자진신고사업장 없음
피보험자 신고(사업장별 매분기 1건~3건), 일자리안정자금 병행신청(사업장별 매분기 1건~9건)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신고(100개소), 신규 성립신고 실적(10개소)

대행기관명	수임 사업장수	연간 지원금				
		합계	피보험자신고 대행지원금	보수총액신고 대행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지원금	적용촉진 장려금
○○○세무 회계사무소	100개소	9,700,000원	4,800,000원 (12천원×100개소×4회)	2,100,000원 (18천원×50개소) +(24천원×50개소)	2,400,000원 (6천원×100개소×4회)	400,000원 (40천원×10개소)
산정방법	▸ 피보험자신고대행지원금: 위임사업주당 12,000원 분기별 지급 ▸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5명 미만 사업장 18,000원, 5~30명 미만 사업장 24,000원 지급 ▸ 일자리안정자금대행지원금: 피보험자신고와 병행하여 신청한 경우 위임사업주당 6,000원 분기별 지급 ▸ 적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보험 신규 성립신고시 40,000원 지급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1 토탈서비스 인증서 로그인

가. 토탈서비스 인증서 로그인

-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토탈서비스에서 "사무대행기관"으로 인증서 로그인 후 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사무대행기관 인증서 로그인 대상

① 사무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사업장 명의 인증서
② 사무대행기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대표자 명의 인증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된 사무대행기관 소속 직원 명의 인증서



01 로그인 ›› 02 사무대행기관 로그인 선택

※ 사무대행기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야 함

나. 대표자 or 소속직원 개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방법



01 대표자 or 소속직원 개인명의 인증서 로그인 체크 ›› 02 대표자 or 소속 직원 주민번호 입력 ›› 03 대표자 or 소속직원 인증서로 로그인

다.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방법



01 사업장 명의 인증서 로그인 체크 ›› 0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03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라. 보안서약서 동의 후 인쇄 보관



○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사용자 정보 확인

[노무법인다산]님은 보험사무대행기관 회원 자격으로 로그인하셨습니다.
아래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사용자 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고용종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람.

■ 보험사무대행기관 정보

인가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보험변경신고>>**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 메뉴에서 변경신고하시기 바람

■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유형	사무대행기관

■ 개인정보보호 의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자료의 **열람내역(열람자, 열람시각, 열람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보안서약

위 회원가입자 본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01

> 위 보안서약에 동의하여야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02

보안서약서 인쇄하기

01 보안서약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 버튼 체크 ›› 02 보안서약서 인쇄하여 보관

마. 근로복지공단 전용 인증서 발급 방법



01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신청하기 클릭

- **토탈서비스와 4대 사회보험사이트에서는 일반 금융권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업무 가능**
-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제3자 활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토탈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서비스 제공**
- **필요시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하여 업무 활용 가능**

〈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소개 〉

구분	용도제한 구분	이용 가능 사이트	발급비용 (VAT 별도)
사업장명의 공인인증서 (법인 등 사업자용)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업무 (금융 · 증권 거래, 나라장터, 국세청, 전자계약, 전자입찰 등)	80,000원
	용도 제한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퇴직연금서비스 (pension.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건강보험EDI 서비스 (edi.nhis.or.kr) 국민연금EDI서비스 (edi.nps.or.kr) 고용보험 (ei.go.kr) ※ 일반 금융거래 불가능	20,000원
개인명의 공인인증서 (개인용)	용도 제한		10,000원

2 사무수임 신고 및 사무수임 해지 신고

보험사무 수임신고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03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임 신고 선택

04 수임신고 사업장의 관리지사 선택

※ 관리지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시 수임대상지역으로 인가받은 지역에 한하여 선택 가능

05 수임신고 사업장의 관리번호 및 수임일자 입력

- 관리번호는 직접 입력하거나 「돋보기 」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
- 수임일자는 수임신고 하는 현재 날짜를 입력
- 행추가를 클릭하여 다수 사업장 동시 신고 가능

※ 사업장 관리지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06 사업주와 체결한 "사무위탁서" 스캔 첨부

- 다수 사업장을 입력한 경우 각각의 "사무위탁서"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무위탁서" 첨부 생략

※ 스캔파일명에는 특수문자(괄호, 따옴표, 언더바 등) 사용 금지

07 「접수」를 클릭하여 사무수임 신고 완료

보험사무 수임해지 신고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03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임 해지 신청 선택

04 수임해지할 사업장이 소속된 관리지사 선택

05 수임해지 사업장의 관리번호 및 수임해지사유, 해지일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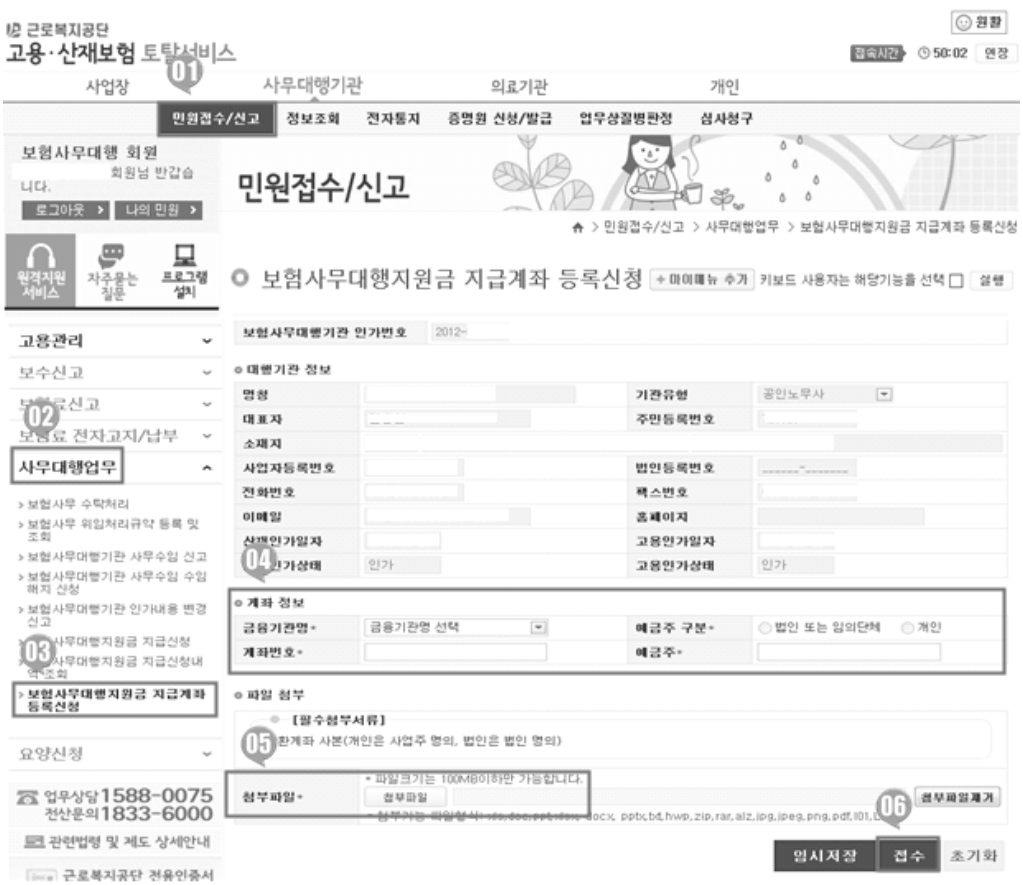
- 관리번호는 직접 입력하거나 「돋보기 🔍」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
- 수임일자는 수임신고 하는 현재 날짜를 입력
- 행추가를 클릭하여 다수 사업장 동시 신고 가능

※ 사업장 관리지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06 「접수」를 클릭하여 사무수임 해지신고 완료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 및 지급신청 등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03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선택

04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05 통장사본 스캔 첨부
- 스캔파일명에는 특수문자(괄호, 따옴표, 언더바 등) 사용 불가

06 「접수」를 클릭하여 계좌등록 신청 완료
- 이미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지원금 지급신청 가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03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지급신청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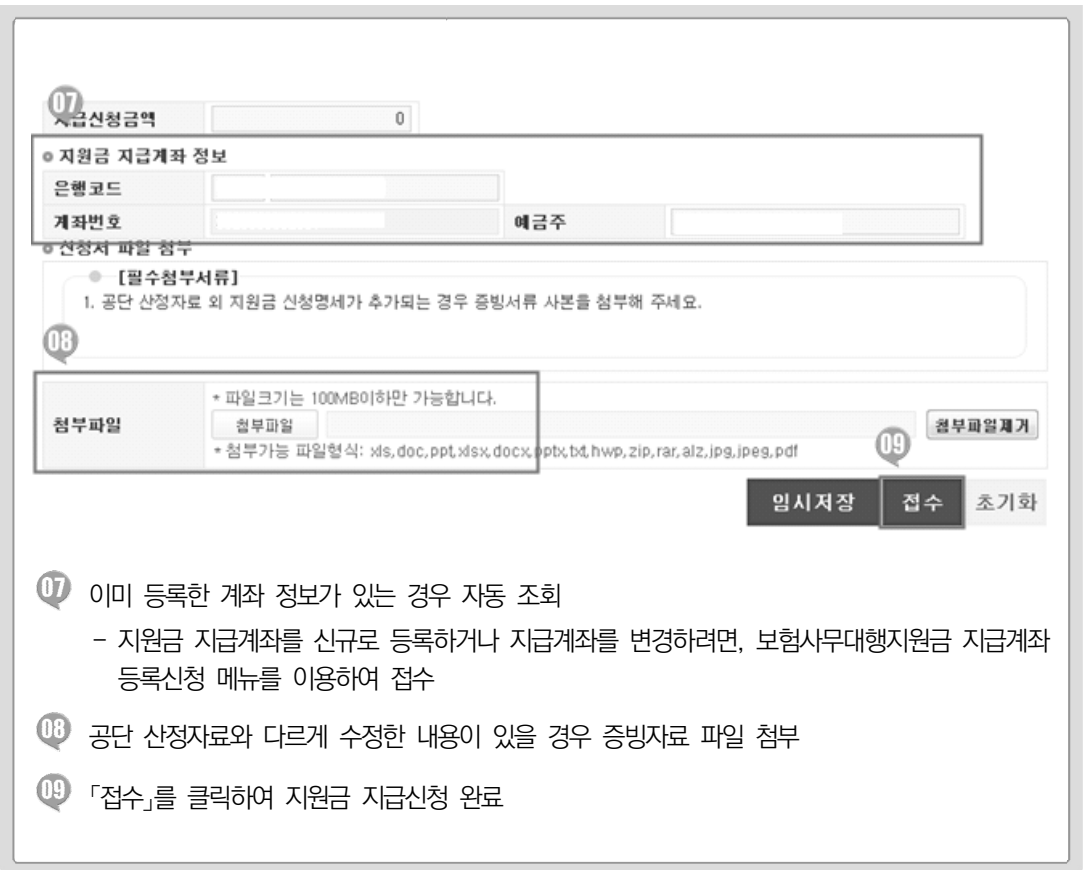
04 지원금구분, 신청대상년도, 신청대상분기 선택

05 공단산정자료 조회 버튼 클릭

- 공단에서 구축한 지원금 산정자료가 조회되며 조회된 정보는 수정 가능
- 이미 지원금을 신청하여 처리완료된 경우 동일 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역 조회 불가

06 신청명세 다운로드 및 업로드 / 행추가 및 행삭제

- 입력정보에 조회된 사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거나, 수정한 자료 업로드 가능
- 행추가, 행삭제 기능을 활용하여 공단산정자료 수정 가능



07 이미 등록한 계좌 정보가 있는 경우 자동 조회

- 지원금 지급계좌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접수

08 공단 산정자료와 다르게 수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파일 첨부

09 「접수」를 클릭하여 지원금 지급신청 완료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내역조회



01 사무대행기관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02 사무대행업무 메뉴 선택

0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내역 조회 선택

04 조회 버튼 클릭
- 조회일 기준 5년 이내 자료 조회됨(보험사무대행지원금 소멸시효 5년)

05 보험사무 대행 실적에 따라 공단에서 산정된 지원금이 존재하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미신청"으로 조회

06 「지원금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화면"으로 연계됨

제10편

참고 사항

- 참고1 서식자료
- 참고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참고4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기준 비교
- 참고5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참고1 | 서식자료

- 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초기 화면의 바로가기메뉴의 서식자료 선택 후 검색





참고2 |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 등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은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의료인) 등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성 대 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한도)
		사용자의 부담을 기초로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 타 경제적 이 익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우리사주조합 관련 근로소득 과세 (조특법88의 4)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비과세 근로소득의 판단 예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 46013-3228, 1996.11.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12-3)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 출장·연수 및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소득세법 기본통칙-16…1 ; 법인46013-3631, 1996.12.27.)

참고4 |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	×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 · 훈련 후 해당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	×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	-	×	×	×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 제모 및 제화	-	×	×	×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월20만원	×	×	×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	×	×
-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	×	×	×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월20만원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월20만원	×	×	×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월20만원	×	×	×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	×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	×	×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	×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	×	×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연 240만원	×	×	×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	×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10만원	×	×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월10만원	×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	×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	×	×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또는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연 500만원	×	×	×

참고5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대표번호 : 1588-0075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공 단 본 부	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444-28
근로복지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072-54
산재심사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영등포동2가)		072-54
산재심사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영등포동2가)		072-54
인재개발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278-03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충무로3가)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45-54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10층(대치동)	서울 강남구	061-93
서울관악지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5층,1011층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83-79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72-54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4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055-10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6층(상봉1동,리베로빌딩)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020-98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8~12층(신수동)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041-08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서울 서초구	067-20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동 2가)	서울 성동구	047-82
남 양 주 지 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7층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117-54
의 정 부 지 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금오동)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군, 강원 철원군	117-54
강 릉 지 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포남동)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254-92
영 월 지 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KT빌딩 3층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262-33
원 주 지 사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	강원 원주시, 횡성군	263-87
춘 천 지 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 (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강원 춘천시, 홍천, 인제, 화천, 양구, 경기 가평	244-15
태 백 지 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강원 태백시, 삼척시	260-08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1층(영등포동2가)	서울·강원 권역 소재 지사 및 의정부지사, 전국(내과계질환 중 암 사건, 기타 질환)	072-54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9층(구월동, 미추홀타워)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215-56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고 양 지 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마두동)	경기 고양시, 파주시	104-10
부 천 지 사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7~10층(상동)	경기 부천시, 김포시	146-23
성 남 지 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6층(도촌동)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134-26
수 원 지 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4층(정자동)	경기 수원시	163-13
안 산 지 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3층(본오동)	경기 안산시, 시흥시	155-32
안 양 지 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9층(안양동)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140-06
용 인 지 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1층(마북동)	경기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169-21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14-17
평 택 지 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7~9층(서정동)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177-74
화 성 지 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9층	경기 화성시	183-02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3층(구산동)	인천·경기 소재 지사(의정부지사 제외)	214-17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8층(둔산동)	대전(유성구제외), 충남 금산군	352-09
보 령 지 사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1~3층(동대동)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334-33
서 산 지 사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2~3층	충남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319-98
유 성 지 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8층(반석동)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 논산, 계룡, 세종특별자치시	340-68
천 안 지 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8층(불당동)	충남 천안시, 아산시	311-69
청주지사 (본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 (내덕동)	충북 청주시, 진천,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본관 : 경영복지·가입지원, 별관 : 재활보상)	284-81
청주지사 (별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28, 4층 (내덕동)		
충 주 지 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봉방동)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274-28
대전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9층(둔산동)	대전·충남·충북 소재 지사	352-09
광주지역본부(본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8~10층(양동)	광주(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본관: 경영지원,가입지원1·2부,재활보상1·2부, 복지사업부, 별관: 부정수급예방부,송무부)	619-25
광주지역본부(별관)	광주 북구 금재로 30, 4~5층(유동)		612-40
광 산 지 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층, 10층(우산동)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 영광, 함평	623-64
군 산 지 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1~3층(장미동)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540-26
목 포 지 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전남 목포시, 무안,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87-30
순 천 지 사	전남 순천시 조례1길 10-27, 1층(조례동)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579-47
여 수 지 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전남 여수시, 광양시	597-00
익 산 지 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1층(어양동)	전북 익산시, 김제시	545-52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전주지사 (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인후동1가)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 (본관: 경영복지부, 재활보상1·2부, 별관: 가입지원1·2부)	550-14
전주지사 (별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3길 21-12, 5층 (인후동 1가)		550-13
제 주 지 사	제주 연신로 14 (이도2동)	제주	632-25
광주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광주 북구 삼소로 141, 1층(대촌동)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지사	610-04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3층, 7~9층 (삼덕동2가)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419-48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원대로 130, 3층(침산동)	대구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415-60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8~9층 (두류동, 감삼빌딩)	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426-45
경 산 지 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6~7층(중방동, 도균빌딩)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386-21
구 미 지 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392-81
안 동 지 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용상동)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367-11
영 주 지 사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9층(휴천동)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361-26
포 항 지 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1~3층(대잠동)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376-85
대구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 12층(대명동)	대구·경북 소재 지사	424-25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4~9층(초량동)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487-31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3층(부곡동)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462-74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기찰로 12, 6~7층(덕천동, 이수빌딩)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465-48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13층(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472-44
울 산 지 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층(옥동)	울산광역시	446-61
양 산 지 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3층(석산리)	경남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506-35
진 주 지 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8층(칠암동)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 거창, 산청, 하동, 함양, 남해	527-25
창원지사 (본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3층(신월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본관 :경영복지, 가입지원1부, 재활보상1·2부, 별관:가입지원2부)	514-39
창원지사 (별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6, 1층(신월동)		273-84
통 영 지 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7층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530-15
부산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4, 7층(초량동)	부산·울산·경남 소재 지사	487-29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우편번호
인천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운동재활관, 척추전문센터, 관절센터, 뇌졸중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치질클리닉	214-17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드림건강증진센터	153-24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재활전문센터, 근골격계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515-24
대구병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재활치료실	414-05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579-47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285-3)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343-84
태백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재활전문센터, 호흡기 중심 재활치료	260-52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재활전문센터	257-38
정선병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261-29
경기요양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부설 케어센터)	185-58
재활공학연구소	인천 부평구 경인로10번길 26 (구산동)		214-17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본관 2층(구산동)		214-17
콜센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별관 2층(구산동)		214-17
	광주 북구 삼소로 141, 1층(대촌동)		610-04
	울산 중구 종가로 305, 9층(우정동)		445-38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파트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좋은점

기업
- 부담금 전액 손비처리로 세금절감(DC형)
- 분할적립으로 기업부담 평준화/부채차감
-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근로자
- 퇴직급여 사회 적립을 통한 수급권 보호
- 과세이연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효과
- 추가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저렴합니다
업계 최저 수수료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간편합니다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 에서 적립금 자산관리를 합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사업주 부담)가 부담된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계약 이전할 수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적립액 기준)는 누적금액이 높아지면 수수료도 상승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수료는 업계 최저로 타 연금사업자의 DC 및 표준형 DC 보다 저렴합니다.
  ※ 공단 퇴직연금 수수료 0.3%~0.38%

퇴직연금 가입문의

1661-0075 http://pension.kcomwel.or.kr

2020년도 산재 ·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인 : 심 경 우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자격부과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인 쇄 : 센트럴프린텍